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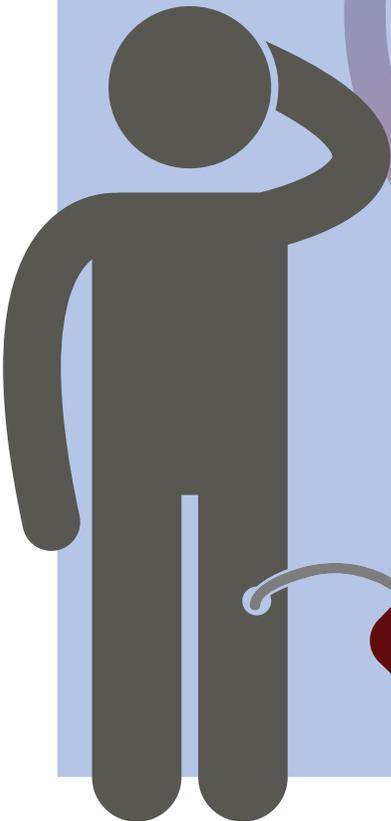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2024. 0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대응팀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연구진

권미정 | (사)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

강은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예진 | (사)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

박공식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무사

이주영 |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

정주연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활동가

발행

2024년 06월 10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김용균재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연락 | uniconoop2023@gmail.com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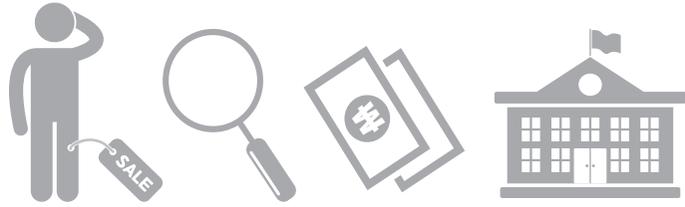
2024. 0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대응팀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I. 조사연구의 개요

1. 들어가며 | 008
2.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법제 | 013
 - 1) 현장실습의 규율 연혁 | 013
 - 2) 2021. 7. 6. 전면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016
 - (1) 개정 이유 | 016
 - (2) 주요 개정 내용 | 017
 -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주요 차이점 | 022
 - (4) 개정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 | 024
 - 3) 개정 이후 관련 통계의 변화 | 025
3. 연구의 목적·방법·범위 | 029

II. 설문조사 의견 분석

1. 개요 | 034
2. 분석결과 | 036
 - 1) 응답자 현황 | 036
 - 2) 실습학기제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인식 | 038
 - 3) 실습학기제 참여자 경험 | 040
 - 4) 평가 | 048

III. 참여자들이 말하는 실습학기제

1. 면접조사 개요 | 056
2. 규정에 따른 차이 존재 여부 | 058
 - 1) 대학생 현장실습 규정이 없던 시기 | 058



2) 대학생 현장실습 규정이 제정된 시기 | 062

3)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으로 개정된 시기 | 067

3. 참여자들이 겪은 실습학기제 | 074

1) 쉼 노동력 | 074

2) 권리의 부재 | 075

3) 학교의 관리 미흡, 부재 | 076

4) 포기하는 경험 | 078

5) 피해는 학생들의 몫 | 079

6) 직무연관성 없는 실습업무 | 081

7) 그럼에도 실습학기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 082

IV. 제언

1.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 | 086

2. 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 088

3. 현장실습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 091

4. 학생들의 의견 확인과 참여 보장 | 093

5. 다시 이유 묻기 | 095

참고자료

참고자료1. 2023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 | 098

참고자료2. 선전문 | 108

참고자료3. 운영규정 | 110

참고자료4. 참고문헌 | 127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I

조사연구의 개요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현장실습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일 경험 제도이다. 197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의 전신인 산업교육진흥법에 현장실습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산업교육진흥법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이 일정 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로 전문대학에서 현장실습을 시행하였다. 1997년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로 규정되었다.¹

정부는 2011년에는 대학의 산학협력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비롯한 산학협력 12개 항목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포함하였다.² 정부는 취업에서 실무능력과 경험의 중요성이 커지며, 대학의 실무중심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다고 보아 현장실습을 확산·장려하고, 현장실습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시를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대학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³ 정부의 현장실습 활성화 정책으로 2011년 공시 당시

1. 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대학정보공시, 산학협력 관련 12개 항목 공시”, (2011. 12. 01)
3. 교육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2013. 1)

10만 명 미만이던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는 2016년 15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는 당시 대학생 수의 5%에 달한다.⁴

현장실습은 학생이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는 ‘교육적 기능’이 우선되는 ‘학생의 실무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이다.⁵ 그러나 목적이 무색하게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전공과 무관한 직무중사, 저비용 노동력 제공수단으로의 변질, 학생의 위험에의 노출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5년에는 청년에 대한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다음해 현장실습 운영의 표준화와 학생 보호를 목표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교육부 고시로 제정되었다.⁶ 당시 청년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대학의 호텔·관광·조리·외식·식품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81개 업체들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현장실습생들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월 평균 351,993원에 불과했다. 월 실습비가 50만 원에 미달하는 비율은 전체의 81.36%에 달했다.^{7·8}

운영규정 제정 이후에도 ‘열정페이’ 등 현장실습을 둘러싼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았다. 2019년 7월에는 현장실습생이 방사능 피폭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학생은 현장실습 첫 날부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⁹ 2020년 2월에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외항선 승선 실습을 위해 나섰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¹⁰ 2020년 국정감사 당시

4. 김승경·최정원·강정환,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5, 21.
5. 교육부·산학협력정책연구소,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2017. 6.), 9-10.
6. 2016년 운영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2013년 교육부가 배포한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이 존재하였으나, 법령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바가 없었다.
7. 청년유니온 보도자료, “무급인턴·열정페이·수습직원 갑질 해고 논란을 통해 본 청년층 과도기 노동의 실태”, (2015. 1. 28.)
8. 주 40시간 기준 2014년 최저임금은 월 1,088,890원이었다.
9. 유선희, “주 40시간 일했는데 월급 50만 원.. 대학생 현장실습제 구명 송송”, 경향신문 (2022. 7. 17. 17:1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171658001>
10. 다만 승선 실습의 경우 고등교육법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아닌 ‘선박직원법’과 ‘현장 승선실습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권인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장실습 참여 학생 12만 6천명 중 실습 지원비 미수령자는 5만 1천 명에 달했고, 2019년 산학협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실습 참여 학생 중 73.7%가 60만 원 미만(4주 기준)의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다.¹¹

교육부는 2020년 경의 일련의 사건들과 학생들의 ‘열정페이’ 문제가 다시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21년,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그 명칭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으로 변경하였다. 당 규정은 일부 개정되었으나, 큰 틀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2021. 7. 6.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021년 전면 개정을 기점으로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뉘어 규율되기 시작하였으며, 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되고, 실습기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과 대학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이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습학기제’로 통칭)

그러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실습학기제 현장에서 서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적잖이 발견되거나 보도되었다.

2022년 2월 4일 학교의 소개를 받아 실습을 나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이 고압적인 실습기관의 태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 직무교육 부재, 위협적인 언사와 욕설 때문에 6일 만에 실습을 중단하였다. 해당 학생의 실습비는 주 5일 40시간씩 4주간 일하고 받은 5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절반이 안 됐다. 나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었음에도 보호 장구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학생이 노동환경에 대하여 항의하자 폭언이 이어졌다. 학생은 실습기관의 문제를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는 학생에게 대체할 실습기관을 구해오거나 문제가 된 실습기관으로 다시 갈 것을 종용하였고, 이를 학생이 이행하지 않자 학생의 실습학기제 지원 사실과 실습 사실 자체를 전산 기록에서 삭제하였다. 해당 학교는 실습학기제 이수가 졸업 필수 요건이었기에, 학생은 이 사건으로 원치 않게 졸업까지 미뤄야 했다. 학생은 교육부에 학교의 운영규정 위반을 신고하였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2·13·14}

2022년 실습학기제에 참여하였던 한 학생은 “실제 새벽 5시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도

찾았지만 “야간수당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전히 전공과 관계없는 잡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나 단순 서류 처리 등의 일을 실습생이 도맡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증언한 학생도 있었다.¹⁵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으면서 그만두려고 생각했지만 졸업을 위한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다녔다”는 학생도 여전히 존재한다.¹⁶

운영규정 개정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2022년도 대학공시 자료에 따르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37,834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학생이 37,395명이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13,881명 중 9,834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¹⁷ 산재보험 미가입은 운영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운영규정이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실습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이다. 2022년 6월에는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생이 상토혼합기(비료 배합 기계)에 끼어 숨지기도 하였다. 이 학생은 5일 4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월 90만 원을 받았다. 임금이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로 수렴되는 것이다. 학교는 사업주와 ‘장기현장실습교육 협정서’를 맺고 학생을 보냈지만 이 화훼농장은 1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도 아니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실습기관 선정 시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18·19}

11. 교육부 규제영향분석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2021. 2. 25.)

12. 대학생현장실습대응모임 보도자료,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피해자의 권리를 기각한 인권위원회에 묻는다!”, (2023. 6. 12.)

13. 유선희, 앞의 글.

14. 세훈(가명), “[6411의 목소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지켜주세요”, 한겨레 (2023. 1. 11., 19:06),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5340.html>

15. 이지원, “현장실습 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은”, 현대신문 (2023. 4. 4.), 1

16. 김한울, “‘단순 잔업’ ‘허드렛일’에 또 다시 우는 대학생, ‘현장실습 인턴제’의 허와 실”, 한국대학신문 (2022. 5. 6., 20:04),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830>

17.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2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2013. 12.), 118, 124.

18. 주하은, “현장실습 중 사망한 학생, ‘저렴한 노동력’ 취급 받았나”, 시사HN 773호 (2022. 7. 13.)

19.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의무실습은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따라 진행되어, 교육부 고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2년 한 해 위와 같이 2021년 운영규정 개정 이후에도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인권 침해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경험에 대한 최근의 실태 조사 또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학생들의 실습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와 반복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언을 구하고자 한다.

2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법제와 통계

1) 현장실습의 규율 연혁

한국 법제에 ‘현장실습’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이 법에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재학 중 일정한 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주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1997년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고,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제정 때부터 제22조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로 규정되었다. 2011년 대학정보공시 현황에 대한 집계에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가 포함되고 이러한 통계가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되면서 일반대학에서도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²⁰

법령에 ‘현장실습’이라는 용어가 일찍부터 등장한 것과 별개로 ‘현장실습’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법령으로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었으며²¹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 발간한 운영 매뉴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20.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의 보도자료

21.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2021. 7.), 17.

2015년 현장실습이 사실상 청년에 대한 ‘열정페이’ 형식의 근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장실습 운영의 표준화와 학생 보호를 목표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2016년에서야 교육부 고시로 제정되었다.²²

그러나 2016년 운영규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 조항이 없어 수범자인 기관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6년 운영규정 마련과 함께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일련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마침내 2018년 고등교육법에 현장실습은 위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2016년 제정된 운영규정이 2018년에서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후 2021년 운영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현재의 실습학기제 운영 방식이 정리된 것이다.

대학생 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그 상위 법령의 변천사는 아래와 같다.

❶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2016. 2. 29. 제정, 2016. 3. 1. 시행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아 제정될 당시에는 법령의 위임규정이 없어 구속력을 갖지 못하였다. 고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이 없고, 당 규정에서도 고등교육법을 인용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규정에서 의미하는 ‘현장실습’이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과 동일한지 불분명하였다.

교육부는 2017. 3. 1. 다시 고시를 전면개정하여 고시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이 고등교육법 제 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

❶ 22. 구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 3. 1.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시행 2016. 3. 1.] [교육부고시 제2016-89호, 2016. 2.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시행 2017. 3. 1.]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 3.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개정

교육부는 운영규정을 마련한 후 해당 운영규정이 강제성을 가지도록, 고등교육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고등교육법보다 먼저 개정되어,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이후 2017. 11. 28.(2018. 5. 29. 시행)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현장실습수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를 것이 명문화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위법령 개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강제성을 띤 법규로 작동하게 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14호, 2017. 5. 8. 일부개정]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38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의 내용 전부 개정

교육부는 현장실습의 표준화를 더욱 꾀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 7. 6.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그 명칭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현행과 같이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방법’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기준을 준수하고,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방법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서 규율되게 되었다.

이후 2021년 12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실습에 대한 관리·운영규정의 추가를 위한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2021년 7월의 전면 개정 당시의 내용대로 시행되고 있다.

2021. 7. 6.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전면 개정 이유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21. 7. 6. 전면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²³

(1) 개정 이유

교육부는 2021. 7. 6.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을 공고하며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성 있는 교육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실습학기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습학기제에 대하여 “전공과 무관한 직무종사나 저비용 노동력 제공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운영기준·절차의 표준화를 통한 질적 내실화 및 학생 권익과 안정성을 강화한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변화”를 위하여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²⁴

2015년 학생들에 대한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되어 2016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이 마련되었고, 해당 규정이 2018년 이후부터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강제성을 띠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에 대한 ‘열정페이’ 문제, 실습학기제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 기준의 부족,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는 지속되었다.^{25·26·27} 당시 규정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 의무는 존재하나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었고, 실습지원금 지급이 원칙이었으나 지원금 지급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고, 지원금 액수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7월 6일, 2016년 운영규정을 마련할 때와 동일한 취지인 실습학기제 체계화와 학생 권익 강화를 위하여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산업재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실습지원금 액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

개정은 실습학기제의 체계화·표준화, 학생 권익 강화 및 실습 내실화,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²⁸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현장실습 수업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되어 규율되기 시작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기준으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전체 실습시간의 10~25%로 배정하도록

23. 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2021. 12. 1. 교육부고시 제202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서술하였음. 위 고시는 2021. 12. 1., 2022. 1. 1. 두 차례 개정되었으나, 큰 틀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2021. 7. 6.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4. 교육부 공고 제2012-103호.

25. 유선희, 앞의 글.

26. 다만 당시 보도된 승선 실습 중 사망한 사고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아닌 ‘선박직원법’과 ‘현장 승선실습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27. 교육부, 앞의 규제영향분석서.

28. 교육부 공고 제2012-103호.

하여 교육적 목적을 강조하고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발생 시 실습기간의 1/4 이내에 대하여 재택 현장실습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습학기제로 운영하려면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구분 없이 실습기관은 산재보험에, 학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① 실습학기제 체계화 및 표준화

개정된 운영규정은 ‘현장실습 수업방법’이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규정 제2장과 제3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규정 제2장과 제4장의 적용을 받는다.

제1조에 의하면 운영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 및 산학협력법 제11조의 3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2조 제1호의 ‘현장실습 수업방법’은 고등교육법과 산학협력법의 ‘현장실습수업’ 내지 ‘현장실습’을 의미한다.

또한 제3조는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의 경우²⁹에는 운영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타 법과의 관계에서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현행 규정이 ‘현장실습학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현장실습’이 갖는 사회 통상적인 용례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현행 규정은 ‘현장실습수업(제2조 제1호)’과 ‘실습학기제(제2조 제2호)’를 별도로 규정한 2021 개정 이전의 운영규정이, 실무에서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구별에 대한 혼선을 가져오자 ‘현장실습 수업방법’이 실습학기제와 별개의 제도가 아닌, 단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방법에 의미한다고 규정하여(제2조 제1호), ‘현장실습 수업방법’이란 곧 ‘실습학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현행 규정은 ‘현장실습 수업방법’은 통일된 양식에 따라 진행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학교의 책임과 재량 하에 자율성과 다양성이 담보된다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둘 중 하나의 형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규정이 마련한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운영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규정이 마련한 서류 양식(별지 각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실습학기제의 표준화를 피하면서도,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동시에 운영할 것을 선택하였다.

교육부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마련한 이유는 개정 당시 일부에서 제기한 “실습학기제를 표준화할 경우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³⁰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영규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서 학교에게 인정되는 재량이 오히려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습지원비 미지급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② 학생 권익 강화 및 안전망 구축

운영규정은 실습학기제의 교육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직무 관련 교육 시간 비율이 10%~25% 사이일 것,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직무 관련 교육 시간 비율이 25%를 넘을 것을 요구한다(제5조). 다만 제5조 규정을 준수하여 실습학기제가 진행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영규정 제18조는 학생 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동조는 대학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의무가입(제18조 제3항)하고, 기관은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제18조 제2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참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29.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선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원의 교육실습 등이 있다.

30. 한국공학한림원, “현장실습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2018), 53.

또한 동조는 학생 보호를 위하여, 이전 운영규정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각종 사고·재해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제18조 제1항).

이외에도 동조에서 휴게시간과 휴일에 관한 원칙을 (제18조 제4항, 제18조 제6항)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의 경우 반드시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7항).

무엇보다 운영규정 제18조 제9항은 아래의 경우에 학생이 학교에 아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학교에게 신속한 대응과 시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학생 권익 침해에 대응하는 공식적인 주체 내지 안전망은 1차적으로 학교 임을 분명히 하였다.

제18조(학생 보호) 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이외에도 운영규정은 실습학기제 운영 원칙(제4조), 운영절차(제11조)를 규정한다. 나아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학교가 검토하여 협의, 조정한 뒤 참여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할 것을 규정한다(제12조, 제13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운영규정이 제시하는 운영 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뿐, 제11조의 운영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운영계획서의 작성·협의·공유 과정은 실습학기제가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다.

제12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 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운영규정은 학교가 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실습학기제 실시 중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 교육부는 점검 조치에 대하여 “학교의 책무성에 기반을 둔 학교의 학생 보호 및 관리 조치의 일환이므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문제점 확인 시 조치 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³¹

③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개정 운영규정은 실습지원비 지급이 재량 사항이었던 과거 운영규정과 달리, 제22조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하여 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개정 운영규정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지원비 지급이 원칙이나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는 등 제25조 제4항 각 호³²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급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를 두었다.

④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개정 운영규정은 코로나 시기에 개정되어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시행과 실습기간의 1/4 내에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다(제27조).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12월에 해당 규정이 재차 개정되어 재택현장실습을 실습기간 1/4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는 예외가 신설되었다.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주요 차이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보다 학생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규정이 제시하는 표준 서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25조 제4항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며 휴게 및 휴일에 대해서도 학교와 실습기관이 별도 협의할 수 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규정에 따른 제한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보다 느슨하

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에서 참여 학교를 지정하고, 학교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실습기관 주도형'으로 진행할 수 없고 학교가 현장실습기관을 발굴하고 지정하는 '학교 주도형' 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2조 제2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2조 제3호)
목표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운영기준 도입으로 학생 권리 침해 가능성 축소	학교의 책임과 재량 하에 제도의 자율성과 다양성 담보
종류	실습기관 주도형(실습기관에서 참여 학교 지정 또는 모집), 학교 주도형(학교 발굴, 주도) 모두 가능(제8조 제1항)	학교 주도형만 가능(제8조 제2호)

31.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86.

3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형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에 따라 근무,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21조 제2항 제2호)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인 경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함(제21조 제1항 제2호).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 자 할 경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함'
임금	교육시간 비율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최소 75% 이상(제22조 제3항)	원칙적으로 지급, 제22조 제3항의 수식에 따라 교육 시간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제25조 제4항에 따른 형태로 운영하여야함
휴게/ 휴일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제18조 제4항)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 및 휴일 협의(제18조 제5항)
교육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10% 이상 25% 미만 (제5조 제2항 제1호)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 25% 초과 (제5조 제2항 제2호)
서식	운영규정 상의 표준 서식 이용	자율
정보공시 연계	정보 공시 및 실태조사 대상(제29조)	정보 공시 대상은 아니나 실태조사 실시 (제29조)

(4) 개정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

❶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실제 출석일이 20일 이상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이 대학 정보공시의 대상이 되었다(제29조). 교육부는 2011년부터 대학 산학협력실태조사에서 현장실습을 분리 공시되고 이런 정보가 각종 평가에 활용되어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수의 양적 성장이 있었으나 노동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현장실습의 양적 성장으로 가려져 있던,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실습기관 모두에게 유익이 있으며,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제도 정착”³³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요건을 갖춘 실습학기제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시 방법을 변경하였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산학협력실태조

사의 내용으로 공개되거나 재정지원사업 등의 평가 요소가 되는 대학공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정부 부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실습 계획 수립 시 표준화된 운영기준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만약, 정부 부처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과 무관한 비학점과정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고, 관련 사업 공고 시 학점과 무관한 형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운영규정은 실습학기제를 위하여 정부 부처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비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수립하여, 최저임금액 기준 25%를 한도로 한다(제30조). 교육부는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각 정부 부처마다 운영기준이 달랐던 재정지원사업의 표준화된 운영기준과 지원 수준을 수립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하였다.

3) 개정 이후 관련 통계의 변화³⁴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은 각 대학의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실습학기제 운영 현황이 정보 공시 대상이 된,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다. 2017년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은 153,182명으로, 전체 재학생 수의 약 6%에 해당한다.³⁵ 그러나 실습학기제 이수 학생은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2018년부터는 145,221명, 2019년 128,054명, 2020년 87,797명으로 지속 감소³⁶하다가 전면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시행된 2021년, 22,357명으로 수렴하였다.

2021년에 특히 이수 학생이 급감한 것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33.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186.

34.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2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의 통계를 사용하였음.

35. 2017년 대학 재학생 수는 2017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2,477,847명이었다.

36. 실습학기제 이수 학생 수의 감소는 2017년 이후 공시 대상이 되는 실습학기제에 대한 기준 마련(전일제, 4주 이상), 전체 대학생 수의 감소(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학 수는 2014년 고점을 찍은 이래 감소하고 있음)와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실습학기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보 공시 집계에 포함되도록 운영규정이 개정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2년 이수 학생 수는 37,834명으로 2021년 대비 69.2%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참여기업 수도 2021년 239개 대학 참여기업 16,873개(대학 당 평균 70.6개사)에서 2022년 전체 261개 대학 현장실습 참여기업 27,778개(대학 당 평균 106.43개)로 64.6% 증가하였다.

2022년 이수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2021년 운영규정 개정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감소로 이어져 대학생들의 실습 참여 기회가 줄어³⁷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운영규정의 강화로 인한 실습학기제 이수 학생의 감소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앞으로 이수 학생 수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래 상술하겠으나, 2022년 별도 집계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수도 13,881명에 달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운영규정 개정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경우 전원이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금을 수령하였고, 그 중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수령한 학생의 비율도 51.8%였다. 이는 분명 2020년 실습지원금을 수령한 학생이 60.3%에 불과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또한 참여 학생의 69.3%만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던 2020년과 달리 참여 학생 전부가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됨에도, 439명의 학생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여전히 일부에서의 규정 위반이 드러난다. 이러한 규정 위반에 대한 학교 또는 교육부 차원의 시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통계상으로는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학생의 최저임금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실습지원금 수령,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습지원금 지급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고려할 경우,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참여 학생의 67.2%만이 실습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수령했다. 통계상으로 실습지원금 액수가 집계되지 않으므로 실습지원금을 지급받은 67.2%의 학생에 대하여 충분한 실습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³⁸ 나아가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되나 참여 학생의 70.8%(9,834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참여 학생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았을 때 실습기관의 운영규정 위반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학교 차원의 제재와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일반대학 학생과 전문대학 학생 사이의 처우 차이이다. 먼저, 애초에 전문대학의 경우 실습학기제 이수 학생 중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의 비율이 높다. 일반대학의 경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이 17.8%(6,068명)에 불과하였으나 전문대학의 경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이 44.3%(7,813명)에 달해,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의 학생이 학생의 권익보호 장치가 제한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하였다.

나아가 일반대학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참여 학생 6,068명 중 5,650명이 실습지원금을 지급받아 참여 학생의 93.1%에게 실습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전문대학의 경우 참여 학생 7,813명 중 3,672명만 실습지원금을 지급받아 참여 학생의 47.0%에게만 실습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실습지원금의 경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운영규정 제25조 제4항³⁹의 요건

37. 김태형·유영삼·박지성·황의택, “교육부고시 개정이 대학 현장실습학기제에 미치는 영향: 대학 현장실습 운영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2023), 49-59.

38.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운영규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무급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교육 시간 비율에 따른 제22조의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9.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을 모두 갖추지 않는 한, 지급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학생에게 실습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은 해당 규정의 준수 여부를 의심케 한다. 보험 가입 학생 수에서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차이가 컸다. 일반대학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5.8%(354명)에 불과하였으나, 전문대학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47.3%(3693명)에 달했다. 이러한 통계는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더욱 취약한 환경에서 실습학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연구의 목적·방법·범위

2021년 운영규정 개정은 실습학기제의 체계화·표준화, 학생 권익 강화 및 실습 내실화,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이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이든 원칙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 수행 기회를 보장받으며,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계산된 실습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12조 제1항의 정보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공유 받아야 하며, 기계작동 등의 실습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운영규정 내용대로 실습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학교에 알리고 학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운영규정 개정 이후에도 드러난 인권 침해 사례들은 운영규정이 목표한 바와 달리 실습학기제 운영에서 ① 전공과 무관한 직무종사나 저비용 노동력 제공수단으로의 변질 및 ② 열악하거나 위험한 실습환경에의 노출 ③ 실습 내용 및 권리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④ 실습기관 및 학교의 규정 위반 ⑤ 소관 부처인 교육부의 감독 의무 해태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2022년 정보 공시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모두 산재보험 가입 없이 진행된 경우가 여전히 집계되었다는 점에서 운영규정 위반 사례가 결코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운영규정 제25조 제4항의 8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무급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도, 참여한 전문대학 학생의 절반 이상(53%)이 실습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운영규정 준수 실태를 의심케 한다.

그러나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실습학기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9년 실습학기제를 이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한 연구⁴⁰와, 비록 실습학기제에 한정하지는 않았으나 일 경험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 인사담당자, 참여 대학생, 대학 내 취업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진행한 2015년 고용노동부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⁴¹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 연구들 이후 실습학기제의 대상자인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⁴²

특히 2021년의 운영규정 전면 개정 이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연구⁴³와 기업⁴⁴과 도서관⁴⁵ 등 실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인식을 기반으로 실습학기제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운영규정 전면 개정의 주요 목적이 참여 학생의 보호 강화에 있었다는 점에서, 운영규정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실습학기제의 수요자이자 운영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생의 실습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을 통해, 실습학기제의 운영 실태의 한 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실습학기제를 경험한 설문 응답자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실습학기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칙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현장실습에 한한다.⁴⁶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제외되는 별도 법령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도 제외된다.⁴⁷

본 연구는 실습학기제의 수요자이자 참여자인 학생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참여 학생들의 경험을 통하여 교육부와 정부가 내세우는 실습학기제의 취지가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국의 보호 조치들이 작동하는지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40. 김승경 등, 앞의 글.

41.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 지원방안”, 고용노동부(2015. 7.)
42. 대학 또는 대학 내 산학협력 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는 각 ‘장후은·허선영·이종호,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2017), 493-500.’와 ‘김기홍·조희경·오병진, “전문대학에서 현장실습과 실습학기제 운영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가 있다.
43. 김태형·유영삼·박지성·황의택, “교육부고시 개정이 대학 현장실습학기제에 미치는 영향: 대학 현장실습 운영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2023), 49-59.
44. 김태형·유영삼·박지성·황의택,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대응 사례 연구”,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2023), 107-117.
45. 노영희, “실습기관 인식조사 기반 표준현장실습의 도입논의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3호 (2022. 8.), 153-179.
46. 실습학기제는 산학협력 관계로 운영되는 형태의 경험/체험학습 중,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의 하나이다. 산학협력 관계로 운영되는 형태의 경험/체험학습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명칭과 절차에 있어서 실습학기제와 구분되어야 한다.
나아가 실습학기제의 형태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의 재정지원사업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여야 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 수련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제30조 제5항 제2호).
별개로 실습학기제와 달리 학교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 일 경험 형태(인턴 등)가 존재하고,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47. 따라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유아, 초·중·등 교사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교사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II

설문조사 의견 분석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1 분석 개요

본 설문조사는 실습학기제에 대한 대학생 일반의 인식을 확인하고, 참여자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기획했다.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20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온라인(구글폼)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195명이 응답했다.

- 1) 조사 대상: 대학생(졸업생 포함)
- 2) 조사 방식: 온라인(구글폼) 설문조사 방식
- 3) 설문내용

항목		세부내용	
응답자 현황		① 성별 ② 학교 유형 ③ 현재(최종) 학년 ④ 주전공 계열	4
기본정보 및 인식		① 표준형/자율형 존재 여부 인식 ② 표준형/자율형 차이 인식 ③ 졸업 필수 요건 여부 ④ 참여 여부	4
미참여자		① 미참여 사유 ② 참여 의사	2
	참여 희망자	① 참여 희망 사유	1
	참여 미희망자	② 참여 미희망 사유	1
			4

참여자	기본 정보	① 참여 시기 ② 유형 ③ 실습기관 연결 경로	3	28
	동기	① 첫 번째 참여 동기와 충족 정도 ② 두 번째 참여 동기와 충족 정도	2	
	교육 및 정보	① 학교·실습기관이 제공한 교육 및 정보	1	
	운영	① 실습 직무와 전공 일치 정도 ② 세부운영계획서 이행 정도 ③ 참여 기간 ④ 계약서·실제 실습시간 ⑤ 계약서·실제 실습비 ⑥ 연장근무 및 초과수당 지급 여부 ⑦ 휴게시간 여부	7	
	평가	① 현장실습 평가(노동력 활용/교육) ② 참여동기 ③ 실습기관 내 담당자 여부 ④ 학교 중간점검 여부 ⑤ 학교 담당자 여부 ⑥ 유해·위험업무 ⑦ 언어·신체·정신적 폭력 ⑧ 성폭력	8	
	문제상황	① 문제상황 경험 여부 ② 문제 내용 ③ 도움 요청 대상 ④ 해결 여부	4	
	개선의견	① 필요성과 그 이유 ② 첫 번째 개선 사항 ③ 두 번째 개선 사항	3	
합계			40	

2 분석 결과

1) 응답자 현황

① 학교 유형 및 계열

구 분		참여 경험		합계(%)	
학교유형	계열	유	무		
교육대학	교육계열	-	2(1.0)	2(1.0)	3(1.5)
	사회계열	-	1(0.5)	1(0.5)	
산업대학	공학계열	1(0.5)	-	1(0.5)	1(0.5)
원격대학	사회계열	1(0.5)	-	1(0.5)	1(0.5)
일반대학	공학계열	11(5.6)	33(16.9)	44(22.6)	183(93.8)
	교육계열	1(0.5)	4(2.1)	5(2.6)	
	법학계열	-	3(1.5)	3(1.5)	
	사회계열	8(4.1)	67(34.4)	75(38.5)	
	예체능계열	1(0.5)	9(4.6)	10(5.1)	
	의약계열	5(2.6)	5(2.6)	10(5.1)	
	인문계열	2(1.0)	21(10.8)	23(11.8)	
전문대학	공학계열	2(1.0)	-	2(1.0)	6(3.1)
	사회계열	1(0.5)	2(1.0)	3(1.5)	
	예체능계열	1(0.5)	-	1(0.5)	
기타	예체능계열	-	1(0.5)	1(0.5)	1(0.5)
합계		35(16.9)	160(82.1)	195(100)	

전체 응답자 195명 중 93.8%(183명)가 일반대학 소속이다. 전문대학은 3.1%(6명), 교육대학 1.5%(3명), 산업대학·원격대학·기타 응답자는 각 0.5%(1명)로 일반대학 외 응답이 적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사회계열 응답자가 41%(8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학계열(24.1%), 인문계열(11.8%), 자연계열(6.7%), 예체능계열(6.2%), 의약계열(5.1%), 교육계열(3.6%), 법학계열(1.5%) 순이다.

실습학기제에 참여한 응답자는 16.9%로 35명이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실습학기제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전체 응답자는 사회계열 학생이 많은 반면, 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공학계열(7.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② 학년 및 필수이수 여부

구분		참여 경험		합계(%)	
학년	필수이수여부	유	무		
1학년	필수이수 X	-	26(13.5)	26(13.5)	27(14.0)
	필수이수 O	1(0.5)	-	1(0.5)	
2학년	필수이수 X	2(1.0)	29(15.0)	31(16.1)	32(16.6)
	필수이수 O	1(0.5)	-	1(0.5)	
3학년	필수이수 X	1(0.5)	33(17.1)	34(17.6)	37(20.2)
	필수이수 O	1(0.5)	4(2.1)	5(2.6)	
4학년	필수이수 X	9(4.7)	41(21.2)	50(25.9)	61(31.6)
	필수이수 O	7(3.6)	4(2.1)	11(5.7)	
졸업	필수이수 X	9(4.7)	21(10.9)	30(15.5)	34(17.6)
	필수이수 O	4(2.1)	-	4(2.1)	
합계		35(18.1)	158(81.9)	193(100)	

무효응답 2건을 제외한 전체 193건 응답 중, 4학년 응답자가 31.6%(61명)로 가장 많았다. 3학년은 20.2%, 졸업생은 17.6%고, 1학년은 14%로 가장 적었으나, 전체 응답자의 규모를 보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응답자 중 현재 4학년이거나 졸업생의 실습학기제 참여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조사 시점의 학년이기에 참여 당시 학년과 차이가 있다. 4학년 중 2명만 현재 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1~3학년 참여자는 6명인데, 그중 절반은 실습학기제가 졸업 필수 요건에 해당하여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무경험을 쌓고, 취업과의 연계를 기대하는 실습학기제의 특성상 졸업을 앞둔 고학년이 주요 대상이 되기에 저학년 참여자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참여 당시 학년 분포는 아래 참여자 기본 정보 항목에서 별도로 기술했다. 한편, 실습학기제가 졸업 필수 요건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1.4%(22명)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는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실습학기제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인식

① 유형별 존재 여부 및 차이점 인식

구 분		필수이수 여부		합계(%)	
		필수이수 X	필수이수 O		
존재 여부	안다	49(25.4)	9(4.7)	58(30.1)	193(100)
	모른다	120(62.2)	15(7.8)	135(69.9)	
둘의 차이	안다	9(4.7)	1(0.5)	10(5.2)	193(100)
	모른다	160(82.9)	23(11.9)	183(94.8)	

실습학기제의 두 가지 유형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30.1%에 불과하다. 실습학기제 참여가 필수요건으로 지정된 학교·학과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도 9명(4.7%)만 두 유형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차이점을 알고 있는 학생은 1명뿐이다. 응답자의 94.8%가 표준형과 자율형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유형의 존재와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10명(5.2%)이다. 자율형 실습학기제는 표준형 실습학기제와 달리 엄격히 관리하지 않는다. 이에 실습환경, 실습비 등 전반적인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학생들이 실습학기제에 나갈 때 그 유형과 조건을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필수이수로 지정한 학교·학과에서도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실습학기제 미참여 사유

구 분	참여 의사		합계(%)
	없음	있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9(11.9)	3(1.9)	22(13.8)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1(0.6)	-	1(0.6)
하고 싶지만 대상이 아니어서	2(1.3)	9(5.6)	11(6.9)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되어서	7(4.4)	10(6.3)	17(10.6)
적절한 실습기관을 찾지 못해서	8(5.0)	15(9.4)	23(14.4)
신청했지만 떨어져서	-	1(0.6)	1(0.6)
제도를 몰라서	30(18.8)	48(30.0)	78(48.8)
기타	1(0.6)	6(3.8)	7(4.4)
합 계	68(42.5)	92(57.5)	160(100)

실습학기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60명 중 48.8%가 ‘제도를 몰라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적절한 실습기관을 찾지 못해서’, ‘시간이 안 되어서’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각 14.4%, 10.6%다. ‘하고 싶지만 대상이 아니어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10.6%, 본인에게 실습학기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는 13.8%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참여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실습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전공을 살리는 실습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평가가 상이해”서, 학년이 낮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향후 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 이를 포함해 미참여자 중 57.5%가 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실습학기제 참여 희망 사유

구 분	합계(%)
현장실습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2(2.2)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32(34.8)
학교에서 해야 하는 분위기여서	-
졸업 필수 요건 충족을 위해	1(1.1)
경력을 쌓기 위해서	21(22.8)
전공분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34(37.0)
기타	2(2.2)
합 계	92(100)

그 이유는 '전공분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37%로 가장 많았다.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도 34.8%, 22.8%로 위 세 가지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 대부분이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상승을 기대하고, 해당 업체와 취업으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력을 쌓는 장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문항은 단일 선택지로 제시되었는데, 기타 응답의 경우 응답자가 보기로 제시된 사유를 여러 개 입력했다. 마찬가지로 취업 연계, 경력, 실무능력 상승을 실습 참여 희망 사유로 들었다.

④ 실습학기제 참여 미희망 사유

구 분	합계(%)
전공이나 관심분야와 일치하는 실습기관이 없어서	18(26.5)
현장실습학기제가 열정페이라고 들어서	5(7.4)
실습기관의 실습환경이 좋지 않다고 들어서	4(5.9)
취업이나 경력개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5(7.4)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27(39.7)
기타	9(13.2)
합 계	68(100)

반면, 실습학기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6.5%는 '전공이나 관심분야와 일치하는 실습기관이 없어서' 실습을 희망하지 않았다. 기타로는 이미 졸업을 했거나,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3) 실습학기제 참여자 경험

① 참여자 기본 정보

실습학기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2.9%는 본인이 참여한 실습학기제의 유

구 분	유형			합계(%)
	모름	자율형	표준형	
실습 당시 학년				
1학년	1(2.9)	1(2.9)	-	2(5.7)
2학년	1(2.9)	1(2.9)	2(5.7)	4(11.4)
3학년	10(28.6)	-	6(17.1)	16(45.7)
4학년	10(28.6)	-	3(8.6)	13(37.1)
합계	22(62.9)	2(5.7)	11(31.4)	35(100)

형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표준형 참여자는 31.4%, 자율형 참여자는 5.7%로, 유형을 인지한 참여자 중에서는 표준형 참여가 많았다. 참여 당시 학년은 3학년이 45.7%, 4학년이 37.1%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학년에 실습학기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실습기관 탐색

구분	유형			합계(%)
	모름	자율형	표준형	
경로				
본인이 탐색	3(8.6)	-	-	3(8.6)
학교에서 배치	7(20.0)	1(2.9)	5(14.3)	13(37.1)
정보 중 선택	12(34.3)	1(2.9)	6(17.1)	19(54.3)
합계	22(62.9)	2(5.7)	11(31.4)	35(100)

참여자 중 54.3%는 학교에서 여러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실습학기제에 참여했다. 학교에서 특정 기관에 배치한 경우는 37.1%였다. 대학생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규정(2021.7.6.) 제6조 1항에 따르면,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는 경우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응답자 3명은 본인이 실습기관을 직접 찾아 실습학기제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중 2명은 '본인이 원하는 실습기관이 있어서', 1명은 '학교에서 실습기관을 찾아오라고 해서' 실습기관을 탐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더라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실습학기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습에 나간 연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 위반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실습학기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찾아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교가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때, 기관을 탐색하고 검증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참여 동기 및 충족도

구 분	첫 번째 동기	두 번째 동기	합계(%)
실습학기제 지원금 제공	2(5.7)	2(5.7)	4(11.4)
기업 이미지	1(2.9)	1(2.9)	2(5.7)
취업 연계에 대한 기대	6(17.1)	5(14.3)	11(31.4)
졸업 필수 요건 충족	7(20.0)	3(8.6)	10(28.6)
전공 지식과 직무 내용의 일치	7(20.0)	1(2.9)	8(22.9)
경력·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	7(20.0)	12(34.3)	19(54.3)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기대	-	4(11.4)	4(11.4)
적성 및 관심 분야와의 일치	1(2.9)	2(5.7)	3(8.6)
아무 생각 없었음	2(5.7)	3(8.6)	5(14.3)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2(5.7)	2(5.7)	4(11.4)
합 계	35(100)	35(100)	70(200)

첫 번째 동기는 ‘졸업 필수요건 충족’과 ‘전공 지식과 직무 내용의 일치’, ‘경력·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각 20%로 가장 많았다. 취업과의 연계를 기대했던 참여자도 17.1%다.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 요건이기 때문에 참여한 항목을 제외하면, 전공과 관련해 직무를 탐색하고, 실무능력을 키우며 경력을 쌓는 것, 이후 취업과 연계되는 것을 기대하고 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참여 동기에서도 ‘경력·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3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취업 연계에 대한 기대’ 14.3%,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기대’가 11.4% 순이다. 졸업 필수요건 충족을 선택한 7명의 응답자 중 2명(29%)은 두 번째 동기에서 ‘아무 생각 없었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선택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큰 참여 동기는 ‘경력 및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다. 실습학기제 참여 응답자의 54.3%가 이를 이유로 실습학기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취업 연계에 대한 기대’, ‘졸업 필수 요건 충족’이 주요 동기로 선택했다. 기업 이미지로 인해 실습학기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2명으로 가장 적었다. 첫 번째 참여 동기로 ‘학업 성취도

향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지만, 두 번째 동기에서는 11.4%가 이를 선택했다. 하지만 전체 동기 순위를 보면, '지원금'과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과 더불어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일부 학업과 관련된 사유로 실습학기제를 선택한 응답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취업과 경력·능력 개발을 위해 실습학기제에 참여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동기 충족도

구 분	충족도				합계(%)	평균점수
	매우 충족되지 않음	거의 충족되지 않음	거의 충족됨	매우 충족됨		
지원금 제공	1	1	2	-	4	56.3
기업 이미지	-	1	1	-	2	62.5
취업 연계	1	5	4	1	11	61.4
졸업 요건	-	-	1	9	10	97.5
전공·직무 일치	-	2	4	2	8	75.0
경력·실무능력 향상	1	7	7	4	19	68.4
학업성취도 향상	-	3	1	-	4	56.3
적성 및 관심 분야	-	-	3	-	3	75.0
합 계	3	19	23	16	61	70.4

동기 충족 정도를 살펴보자. 응답자 한 명당 두 가지 동기를 선택하고, 매우 충족되지 않음, 거의 충족되지 않음, 거의 충족됨, 매우 충족됨,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각각 25점, 50점, 75점, 100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아무 생각 없었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동기로 선택한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각 동기에 대해서 '거의 충족되었다'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거의 충족되지 않음', '매우 충족됨'이 뒤를 이었고, '매우 충족되지 않았다'는 평가는 3명에 불과했다.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실습학기제 참여 동기가 충족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졸업요건의 경우 참여 자체로 요건 충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도 부정적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 점수로 보면 가장 높은 충족도를 보인 항목은 '졸업 필수 요건(97.5점)'이었고, 가장

낮은 충족도를 보인 항목은 ‘학업성취도 향상’과 ‘지원금 제공’이다(각 56.3점). 모든 항목에 대한 점수가 50점 이상이었으나, 가장 많은 이유로 꼽힌 ‘경력·실무 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는 68.4점을 기록했다. 이를 선택한 응답자 중 ‘매우·거의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42.1%다. ‘취업 연계에 대한 기대’는 실습기관과 실습 이후 경로에 따라 평가가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61.4점으로 부정적 평가가 약간 더 많았다. 첫 번째 참여 동기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던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기대’를 두 번째 이유로 꼽은 응답자의 75%도 동기가 거의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습학기제가 교육적 효용을 띠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4 제공된 교육 및 정보

구 분	합계(%)	구분	제공 정보 수(%)
실습기관/근무부서에 대한 정보	26(74.3)	0개	4(11.4)
실습조건(실습비, 실습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24(68.6)	1개	4(11.4)
주차별 커리큘럼	11(31.4)	2개	8(22.9)
실습 평가 방식	15(42.9)	3개	5(14.3)
안전보건교육	15(42.9)	4개	6(17.1)
성희롱 예방 교육	9(25.7)	5개	2(5.7)
표준형, 자율형이 구분되어 있는 협약서	4(11.4)	6개	3(8.6)
상해/산재보험에 대한 정보	8(22.9)	7개	1(2.9)
없음	4(11.4)	8개	2(5.7)
합 계			35(100)

학교 또는 실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과 정보를 확인했다. 응답자의 74.3%가 실습기관이나 근무 부서에 대한 정보를 받았고, 68.6%는 실습비, 실습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실습 조건에 대해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가 그 외 모든 정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준형과 자율형을 구분해 작성한 협약서를 받은 응답자는 4명(11.4%)에 불과했다. 이중 무엇도 제공받지 못한 응답자도 4명이었다. 항목 중 2개에서 4개를 제공 받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모든 교육과 정보를 전달받은 참여자는 2명뿐이었다. 이는 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직무와 전공 일치도

구 분	합계(%)	평균 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	2(5.7)	25점 환산
그렇지 않다	4(11.4)	50점 환산
그렇다	18(51.4)	75점 환산
매우 그렇다	11(31.4)	100점 환산
합 계	35(100)	77.1점

82.9%의 응답자가 실습학기제 중 수행한 업무가 본인의 전공과 일치했다고 답했다.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11.4%,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5.7%다.

6 세부운영계획서 이행 정도

구 분	합 계(%)	평균 점수
세부운영계획서를 받지 못했다	6(17.1)	0점 환산
전혀 그렇지 않다	2(5.7)	25점 환산
그렇지 않다	10(28.6)	50점 환산
그렇다	8(22.9)	75점 환산
매우 그렇다	9(25.7)	100점 환산
합 계	35(100)	58.6점

48.6%의 응답자가 실습기관에서 세부운영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주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34.3%는 계획서에 따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17.1%는 세부운영계획서를 받지 못했다. 51.4%, 과반이 세부운영계획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습 업무와 무관한 세부운영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실습기간

12주를 초과하는 실습학기제를 다녀온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다. 12주 초과 또는 4주 초과 8주 이하(34.3%)가 대부분이었고, 8주 초과 12주 이하, 4주 이하의 기간 동안 실습학기제에 참여한 응답자는 각 14.3%이다.

구 분	합 계(%)
4주 이하	5(14.3)
4주 초과 8주 이하	12(34.3)
8주 초과 12주 이하	5(14.3)
12주 초과	13(37.1)
합 계	35(100)

8 실습시간

계약서 상 실습시간							
구분	실습일수						합계(%)
	계약서X	주1일	주2일	주3일	주4일	주5일	
계약서 X	1(2.9)						1(2.9)
하루 4시간		1(2.9)	-	-	-	-	1(2.9)
하루 6시간		-	-	1(2.9)	1(2.9)	2(5.7)	4(11.4)
하루 7시간		-	1(2.9)	-	-	3(8.6)	4(11.4)
하루 8시간		-	-	-	-	21(60.0)	21(60.0)
하루 9시간		-	-	-	-	4(11.4)	4(11.4)
합계	1(2.9)	1(2.9)	1(2.9)	1(2.9)	1(2.9)	30(85.7)	35(100)

실제 실습시간							
구분	실습일수						합계(%)
		주1일		주3일	주4일	주5일	
하루 4시간		1(2.9)		-	-	-	1(2.9)
하루 5시간		-		-	1(2.9)	1(2.9)	2(5.7)
하루 6시간		-		-	-	1(2.9)	1(2.9)
하루 7시간		-		-	-	6(17.1)	6(17.1)
하루 8시간		-		-	1(2.9)	16(45.7)	17(48.6)
하루 9시간		-		1(2.9)	-	5(14.3)	6(17.1)
하루 10시간		-		-	-	1(2.9)	1(2.9)
하루 12시간		-		-	-	1(2.9)	1(2.9)
합계		1(2.9)		1(2.9)	2(5.7)	31(88.6)	35(100)

실습학기제 참여 응답자 중 85.7%(30명)은 주 5일, 그중 70%(21명)는 하루 8시간 실습을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주 1일부터 5일, 하루 4시간부터 9시간까지 실습시간은 다양했다. 하지만 실제 실습시간과 차이가 있었다. 1명의 응답자는 주 2일 하루 7시간 실습으

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주 3일 하루 9시간 실습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계약서에는 주 3일, 하루 6시간 실습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 주 4일, 하루 5시간으로 시간을 변경해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정해진 실습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주 5일 실습을 하기로 했던 응답자 중에서는 하루 10시간, 12시간 실습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9 연장근무

구 분	모두 받았다	못 받았다	합계(%)
한 적 없다			22(62.9)
5시간 미만	1(2.9)	7(20.0)	8(22.9)
5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3(8.6)	1(2.9)	4(11.4)
12시간 이상	1(2.9)	-	1(2.9)
합 계	5(14.3)	8(22.9)	

참여자의 62.9%는 계약서에 명시된 실습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주 평균 5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무를 했던 응답자는 22.9%, 주 5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연장근무를 한 응답자는 11.4%다.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를 한 학생도 1명 있었다. 연장근무를 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7.1%인데, 그중 62%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특히 5시간 미만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장근무에 따른 초과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일부만 받았다’는 선택지도 함께 제시했으나, 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실습기관이 수당을 지급하는 곳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10 휴게시간

대부분의 응답자가 실습학기제 중 휴게 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었다고 답했다. 참여자 중 4명(11.4%)만 법정 휴게 시간에 다른 4시간당 30분 휴게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 분	합계(%)
휴게시간 부여 O	31(88.6)
휴게시간 부여 X	4(11.4)
합 계	35(100)

4) 평가

① 근로/학습 평가

응답자에게 실습을 하는 동안 수행했던 실습 업무 내용, 실습기관의 처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습 경험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평가를 물었다. 54.3%(19

구 분	합 계(%)
근로 중심의 노동력 활용	19(54.3)
학습 중심의 실무교육 및 실습	16(45.7)
합 계	35(100)

명)가 ‘근로 중심의 노동력 활용에 가깝다’고 답했다. ‘학습 중심’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5.7%다.

실습학기제는 학습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실무교육 경험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실습경험을 ‘노동력 활용’이라고 평가한 것은 문제적이다.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습제도가 여전히 값싼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② 전반 평가

구 분	예	아니오	합 계(%)
참여 동기와 일치	30(85.7)	5(14.3)	35(100)
실습기관 내 담당자 존재	29(82.9)	6(17.1)	35(100)
학교의 진행상황 중간점검	22(62.9)	13(37.1)	35(100)
학교 내 고충 상담기관·담당자 존재	29(82.9)	6(17.1)	35(100)
유해·위험 업무 강요 경험	6(17.1)	29(82.9)	35(100)
언어·신체·정신적 폭력 경험·목적	11(31.4)	24(68.6)	35(100)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경험·목적	7(20.0)	28(80.0)	35(100)

앞서 살펴본 참여 동기별 충족도에서는 ‘거의 충족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일부 충족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참여 동기와의 일치 정도를 확인했을 때는 85.7%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82.9%의 응답자가 실습기관 내 담당자와 학교 내 고충 상담기관·담당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가 중간에 진행 상황을 점검한 곳은 62.9%였는데, 응답자 7명의 학교에서는 담당자가 있음에도 중간 점검이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유해·위험 업무를 강요하거나 폭력적 상황을 경험한 응답자가 일부 있었다.

특히 언어·신체·정신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학생은 31.4%에 달했다. 위험한 업무가 강요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7.1%, 성폭력적 상황을 겪거나 목격한 응답자는 20%다. 적지 않은 학생이 실습 과정에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비를 보면, 여성 76.4%(149명), 남성 23.1%(45명), 기타 0.5%(1명)로 대다수 응답자가 여성이었다. 실습학기제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마찬가지로 77.1%(27명)가 여성이다. 그리고 ‘유해·위험 업무 강요 경험’ ‘언어·신체·정신적 폭력 경험 및 목격’, ‘성희롱·성폭력·성차별 경험 및 목격’ 세 항목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 전원이 여성이었다. 실습기관, 회사는 사회적 구조를 반영한다. 이에 여성이 더욱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참여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위험 환경을 확인하며 실습기관을 관리하고, 보호조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③ 문제 상황(모두 선택)

구 분	응답(%)
현장실습기관 선택 관련 불충분·불명확한 정보 제공	8(47.1)
현장실습계획서와 다른 실습업무 강제	5(29.4)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불성실(실습생 방치)	7(41.2)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근로 중심의 업무 부여	7(41.2)
실습기관의 위험한 업무 환경	2(11.8)
실습기관의 경영책임자·관리자·직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
현장실습협약 내용 위반(실습비 미지급, 실습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	2(11.8)
실습업무 수행 중 사고에 따른 상해	-
실습기관의 경직된 조직문화	5(29.4)
기타	3(17.6)

48.6%(17명)가 실습학기제 진행 중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을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47.1%)가 ‘현장실습기관 선택과 관련하여 불충분하고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학교의 역할 미비를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불성실’,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근로 중심의 업무 부여’가 각

41.2%로, 실습기관에서 교육 목적 외의 실무를 시키거나 실습생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계획서와 다른 업무를 강제하는 것,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응답도 각 29.4%다. 기타 응답으로는 ‘낮은 실습비’, ‘단순 인력배치’ 등이 있었다.

④ 도움 요청

구 분	도움 받았음	도움 못 받았음	합 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9(52.9)
실습기관 담당자	3(17.6)	1(5.9)	4(23.5)
학교 담당기관-관계자	2(11.8)	-	2(11.8)
교수	1(5.9)	1(5.9)	2(11.8)
정부기관	-	-	-
지인	-	-	-
합 계	6(35.3)	2(11.8)	17(100)

실습 중 문제의식을 느낀 17명의 응답자 중 52.9%(9명)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47.1%는 실습기관 담당자에게, 학교 담당 기관이나 관계자,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중 2명은 요청 상대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본 설문에서 문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해결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각 기관 등을 신뢰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은 표본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과반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살펴보아야 한다.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요청할 대상이 있는지, 제도적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⑤ 실습학기제의 필요성

실습학기제에 참여한 응답자 중 94.3%가 실습학기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명이다.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실무경험’과 ‘취업·채용과의 연계, 경력’을 이유로 꼽았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구분	합계(%)
필요하다	33(94.3)
필요하지 않다	2(5.7)
합계	35(100)

“적성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며 취업 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인턴 채용에서도 경력을 중시하는 오늘날, “학생 신분으로 전공 스펙을 쌓기 유용하다”, 지원금으로 인해 “회사 비용이 줄어들어 보다 쉽게 채용이 이루어진다” 등 취업과 관련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습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고 본인의 적성과 맞는지 평가하며 향후 진로를 고민할 수 있고, 또 실습 경험을 경력으로 사용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실습학기제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의 응답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 평가의 의견들과 유사하게 “취업 연계, 직무 경험 등 좋은” 점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에”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거나 권장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실습 과정에서의 문제점보다는 ‘취업·경력·실무능력 향상’등 이점이 더 우선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실습학기제 개선점

실습학기제 참여 응답자의 31.4%가 ‘학교가 충분하고 적절한 실습기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첫 번째 개선 지점으로 선택했다. 전공과 관련되거나 안정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을 충분히 제공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습 환경과 프로그램을 학교가 성실히 점검해야 한다’는 20%, ‘실제 실습시간만큼 적절한 실습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17.1%가 개선점으로 꼽았다. 고충과 사고에 대한 해결, 정부의 관리·감독을 첫 번째로 개선점으로 선택한 학생은 없었다.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을 크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선점으로는 ‘실습비’가 22.9%, ‘실습기관이 전공 실무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가 2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학교의 관리 다음으로는 실제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기대하는 바, 전공과 관련된 실무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습기관의 역할을 선택했다. 첫 번째 개선사항에서는 1명이 선택

했던 ‘실습기관 평가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습학기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14.3%(5명) 있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실습기관이 제공될 것 ② 적절한 실습비가 제공될 것 ③ 실습학기제를 통해 전공 실무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선해야 할 내용 보기	
①	학교가 충분하고 적절한 실습기관을 제공해야 한다(전공,연계,기관수,안정성)
②	실습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실습 전, 사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실습 중 실습환경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가 성실히 점검해야 한다
⑤	실습 중 고충 및 사고에 대해 학교와 실습기관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
⑥	실습학기제 참여 여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실제 실습시간만큼 적절한 실습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⑧	실습기관 평가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교가 실습학기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⑨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전공실무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⑩	정부가 학교와 실습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을 더 잘해야 한다

구분	첫 번째 개선 필요	두 번째 개선 필요	합계(%)
①	11(31.4)	3(8.6)	14(40.0)
②	2(5.7)	1(2.9)	3(8.6)
③	3(8.6)	1(2.9)	4(11.4)
④	7(20.0)	1(2.9)	8(22.9)
⑤	-	4(11.4)	4(11.4)
⑥	2(5.7)	2(5.7)	4(11.4)
⑦	6(17.1)	8(22.9)	14(40.0)
⑧	1(2.9)	5(14.3)	6(17.1)
⑨	3(8.6)	7(20.0)	10(28.6)
⑩	-	3(8.6)	3(8.6)
합계	35(100)	35(100)	70(200)

⑦ 실습학기제의 필요성 주관식 응답

필요하다(33명*, 94.3%)
그래도 취업에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지원금 제도로 회사 비용이 줄어들어 보다 쉽게 인턴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름 실무를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
대학교에서 학문적, 이론적 내용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이론을 실무적으로 실습할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리 현장에 대한 감각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다.
사회진출 이후 근로 현장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어서, 관심 있는 진로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실무력 향상에 도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서
실무를 배우기 위해
실전
이론과 실무의 차이 경험
인턴 등 대부분의 일자리는 경력이 없으면 지원이 어려운데 경력이 없어도 학교와 연계하여 원하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임
잘 운영된다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적성과 일치하는지
제가 선택한 전공은 실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좋은 경험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직업 경험을 잘 쌓을 수만 있다면 필요
진로 관련 직무 경험 쌓기
진로 선택에 도움 됨
진로 선택이 큰 도움
취업 시장에서 현업 경험이 있는 것이 경쟁력이 된다
취업 전 좋은 기회
취업 도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습 경험은 직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하기 전 실무 경험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
취업하기 전 회사생활 체험 필요

특정학과의 경우 실무에서 수습을 해야지만 손에 익거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단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함
학부졸업생이 학생신분으로 전공 스펙을 쌓기 유용한 경험이기 때문에
학생 신분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실무를 익힐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2명, 5.7%)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음.
취업연계, 직무경험 등 좋은 점이 분명했으나,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환경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그런 환경에 방치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심지어 권장하면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정성·대표 및 기업신뢰도 등 평가 완료된 기관이라 설명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은가. 그 평가가 정말 '평가'에 불과하다는 걸. 평가인증제가 적용되는 시장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다. 학업이든, 취업시장이든, 의료·교육업계든... 다음 질문 보기가 아쉬워 더 적자면, 학생이 몸 갈아서 실습하는 건데 평가자는 교수·실습기관·정부 부처인 게 아이러니다.

* 주관식 문항 무응답 2명

III

참여자들이 말하는 실습학기제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1

면접조사 개요

실습학기제에 대한 면접조사는 설문조사 답변자 중 대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이후 진행되었으며 신청자는 총 12명이다. 최종적으로 보고서에 담은 것은 9명의 참가 학생들 경험이다.

면접조사 참여자들

- 참여자A. 시스템제어 | 2011년 6개월 실습
 - 참여자B. 패션디자인 | 2015년 4주 실습
 - 참여자C. 교육공학 | 2019년 2개월 실습
 - 참여자D. 서비스디자인공학 | 2020년 3개월 실습
 - 참여자E. 의류환경학 | 2022년 6개월 실습
 - 참여자F. 건축학 | 2022년 4개월 실습(필수)
 - 참여자G. 생명화학공학 | 2022년~2023년 2개월 실습(필수)
 - 참여자H. 정보통신공학 | 2023년 6개월 실습(필수, IPP장기현장실습)
 - 참여자I. 행정학 | 2023년 6주 실습
-

면접조사 신청자 중 1인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국에서의 실습학기제 경험이 아니라 외국에서의 경험임이 확인되어 면접조사 내용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2인은 의무 실습을 나가야 하는 전공이거나 학기 중의 여러 상황 때문에 면접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 답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같은 대학에서 실습학기제를 참여했거나 동일한 과에서 참여한 케이스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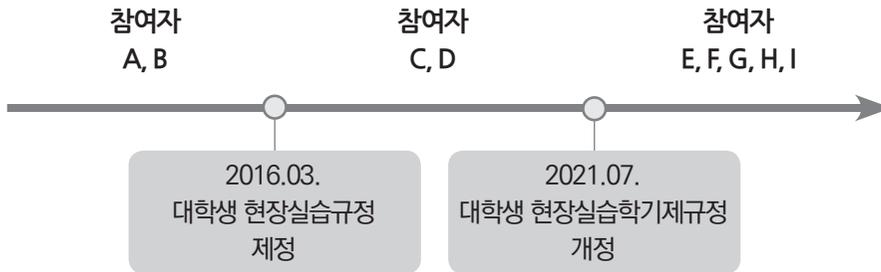
참고로,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나 현장실습수업을 진행한 시기에는 애초에 제한을 두지 않아 (표준·자율 형태로 구분된) 실습학기제 이전 현장실습 참여자도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IPP 장기현장실습 참여자도 있다.

실습학기제는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습이 아닌 학교 밖 경험학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선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러나 학교의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서는 졸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모든 학생이(과에 상관없이) 실습학기제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1/3이 졸업 필수과정이라서 실습학기제를 이수한 케이스이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에게 질 높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은 2017년 3월 1일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전부개정되고, 2021년 7월 6일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으로 다시 한번 개정되어 현장실습학기제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실습참여자들의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규정에 따른 변화를 포함하여 실습학기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규정에 따른 차이 존재 여부

실습학기제 참여자 면접조사에 응해준 9명의 경험을 기준으로 규정이 마련된 시점과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으로 개정된 시점을 중심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학생 현장실습 규정이 없던 시기

2016년 이전 현장실습을 이수한 A와 B는 2011년과 2015년에 현장실습을 이수했다. 반드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었으나 전문대 2학년에 현장실습을 다녀왔다. 당시 실습학기제라는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알지 못했다. 취업 연계에 대한 기대가 현장실습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이며 경력 및 실무능력향상에 대한 기대를 현장실습을 나간 두 번째 이유로 동일하게 선택했다.

현장실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습기관, 학교, 학생 모두 취업(채용)을 전제로 하거나, 취업(채용)으로 연계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진행했다고 보여진다. 즉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는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체험과 학습을 하는 기회이기 보다는 취업하면 배워야 하는 것들(현장에서 쓰는 용어, 도구이름, 작업과정에 필요한 것들 등등 부터)을 미리 익히는 시기 정도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참여자A의 경우 실습기관과 조건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안전보건교육도 받았던 것으로 어렵פות이 기억나지만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취업을 연계한 현장실습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현장실습생이라는 존재로 인식되기보다는 신입사원의 수습 기간 같은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마이스터고에서도 실습을 많이 왔던 곳이다.

“나이가 어리든 뭐를 하든 어쨌든 일을 하러 온 거고. 그러니까 뭐 학생이라고 어떻게 대우한다고 해도 대우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이 친구를 일에서 배제해서 너는 안전한 것만 해라(이럴 수도 없고.) 물론 위험한 거는 안 시키긴 한다.”

참여자A는 취업을 위해 전공을 선택했고 전공과 취업 연계를 하는 실습기관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실습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회사직원이 되었고, 실습 기간 중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리되어 실습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난 날짜가 입사일이 되어있다. 물론 참여자A는 현장실습을 예정대로 6개월을 진행했고 회사가 실습 기간의 일부를 수습 기간으로 친 것이다. 그래서인지 실습학기제를 수행할 때 첫 번째 동기였던 취업 연계에 대한 기대는 거의 충족되었고 두 번째 동기였던 경력과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도 거의 충족되었다고 답했다. 지금도 지역에서는 채용을 하고자 해도 신청하는 이들이 없어서 직접 학교로 가서 취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실습 인원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근래에도 대학생 현장실습생이 오면 같은 팀이나 현장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이 알고는 있다고 한다. 다만 현장실습생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신입사원이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 ‘그냥 학교에서 이쪽으로 온 거구나’하는 느낌이지, 이 친구가 실습생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는 없었”다.

참여자A는 취업을 위한 과정이었던 현장 실습기간 중에는 문제가 됐던 점이 특별히 없었고 “현장실무를 익힐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습학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습 전 사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실습 중 문제가 생길 때 학교와 실습기관의 책임있는 해결 자세를 갖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금 시기에 그때를 생각하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생각하던 곳이란 달라서... 사람이 10명이 오면 그때는 5명은 도망가고, 1년 뒤에는 몇 명 안 남아 있었거든요... 최소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 걸러지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저야 뭐 무던한 스타일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참여자A에 비해 참여자B는 실습을 나가기 전에 학교나 실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교육이나 정보는 전혀 없었고, 취업과 연계하여 자리가 만들어지면 교수를 통해 실습기관을 배치받아 실습을 진행했다.

“그냥 벤더 회사고 뭐 수출입OEM 이런 거 담당하는 회사고 거기 뭐 규모도 있고 괜찮고 너희 집 근처니까 가서 일단 면접봐라’ 이 정도로만 얘기했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어요. (어떤 일을 할 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네. 보조사 이 정도로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실습을 나갔고 실습기관에서도 별도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었고 학교는 진행상황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현장실습의 동기가 되었던 취업 연계에 대한 기대도, 경력과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도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일단 제 자리 팻말은 제가 경력 상으로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인턴'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때 저의 직위는 '아르바이트'라고 자리에 붙어 있었고. 이렇다 하게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건 없긴 했어요.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그냥 보조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일을 주셔서... 선배들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렇

게 물어보라고. 그런데 다 여쭙봐도 이렇다 하게 시킬 게 없으니까 둘러보다가 '이거 정리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심지어 6주 계약 기간으로 나간 실습기관에서 참여자B의 성별을 착각했다는 이유로 4주가 되던 날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당일 아침에 듣고 해고를 당했다. 폭력적이라고 느끼긴 했지만 아르바이트처럼 진행된 현장실습이라 억울하지만 그만두었다.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없었고, 면접자의 친구는 실습비 지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수에게 이야기해서 수습을 하긴 했다.

그래서 참여자B는 학교(교수, 담당자)에서 현장을 좀 외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건 교수님 밖에 없으며, 현장실습생들이 나가는 곳이 어떤지 모른 채 서류상으로만 평가 인증제를 하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¹ 그래서 참여자B는 실습학기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취업연계, 직무 경험 등 좋은 점이 분명했으나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환경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그런 환경에 방치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심지어 권장하면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몸 갈아서 실습하는 건데 평가자는 교수·실습기관·정부 부처 인 게 아이러니”

실습학기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든 제도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체인 학생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실습학기제를 진행한다면 실습기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실제 실습 기간만큼 적절한 실습비가 지급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규정 자체가 없던 시기에 현장실습을 진행한 두 경험자는 제도적으로 다른 절차가 마련

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에서는 신규 현장실습기관은 학교에서 담당이 한번은 실습기관에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등록할 때 가능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만약 서류 확인으로 처리했다면 실습기간 중 방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규정일 뿐 다 지켜지는 건 아니다.

되어 있지 않다보니 학교와 실습기관이 학생들인 자신들을 보호해주어야 하고, 학교는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실습학기제 필요성에 대한 판단 이전에 제도시행이 계속된다면 사전교육을 제대로 하고, 실습비도 적절하게 지급하며 문제가 생기면 학교와 실습기관이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구분	참여자 A	참여자 B
실습기간	2011년 6개월	2015년 4주
학과, 전공	시스템제어과	패션디자인
사전 정보나 교육 여부*	실습조건 등 정보제공 됨 안전보건교육 받음	관련기관의 기초 정보만 제공됨 교육은 받지 못함
전공과 직무 연관성	학교와 MOU 맺음, 연관성 있음	연관성 있음
졸업필수 여부	필수 아님	필수 아님
취업연계 여부	취업 연계	취업 연계
실습비 지급	하루 8시간 주5일 월170만원	하루 10시간 주5일 월180만원

* 참고자료1. 12번 문항 참고

2) 대학생 현장실습 규정이 제정된 시기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학생현장실습 규정은 대학생 현장실습은 ‘교육적 기능’이 우선되어야 하며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실습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현장실습이 수업의 일환이 되도록 선발-배치-교육-평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비전공분야나 단순 업무는 교육적 목적의 현장실습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시기의 규정은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를 구분하고 있다. 현장실습수업에 실습학기제가 포함되는 개념이며 실습학기제는 이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으로 명확히 정리된다.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은 실질적 노동과정으로 보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해야 했다. 수업의 요건이 갖춰졌다면 산업체의 부담(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이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보다 클 때)에 따라 실습지원비 지급여부,

지급시 금액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즉 실습학기제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습기관 또는 학교는 안전교육·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산재보험은 아님)가입은 의무사항이다.

실습학기제 표준협약서 1안 중.

제12조(재해보상) “실습기관”과 “대학”은 “학생”이 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구분²

구분	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
개념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산학협력과정으로 운영	현장실습수업 중 학기 내 일정기간 이상 지속 운영
공통	-모든 학교의 '수업'인 바, 현장실습 수업계획, 수강신청계획, 현장교육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지도계획, 지도(담당)교수 현장방문 지도계획, 평가방식·학점부여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함 -현장실습운영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되, 지급수준은 협의하여 결정	
학점	개별수업의 일부로 운영시, 본 교과목 이수학점에 포함	'현장실습'으로 학점 부여
운영시간	자율적으로 운영	1일 8시간 초과금지 및 야간실습 예외적 인정
협약	필수사항 아님	필수사항, 실습운영 7일전 학생-학교-산업체간 협약 체결
공시	공시대상 아님	연속 4주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운영
학칙	필수사항 아님	대상 학년 및 학기, 시간당 부여 학점, 졸업 필수과목 여부, 최대 학점 인정수 등 학칙 규정 가능
학생보호	필수사항 아님	산업체 수요조사, 실습생 사전교육, 상해보험 가입

참여자C, D는 2019년과 2020년에 현장실습을 다녀왔다. 당시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나뉘어 있지는 않았기에 두 사람 다 자신의 실습학기제 유형

2.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대학생 국내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 실무자용 안내서- 2017.06. 교육부,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공과 일치하는 곳으로 실습을 나갔다고 했지만 참여자C는 원하는 실습기관으로 가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실습기관을 찾았고, 참여자D는 학교가 제시하는 여러 기관 중 선택했다.

학생이 실습기관을 직접 찾아오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학교가 제시하는 실습기관은 실제 선택의 폭이 좁다. 실습기관의 수가 적기도 하고 전공과 매칭하려면 더 적은 수의 기관에서 선택해야 되고, 실습기관에서 하게 되는 일이나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좋아서 선택한다기보다는 선택을 해야만 해서 그나마 전공과 비슷하리라 생각되거나 규모 등을 보고 선택하는 상황이다.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고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서 실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적다. 참여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취약한 자본력에 여러 이유로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실습기관으로 참여하는 현실이 문제다.

“그렇게 규모있는 회사는 학교가 제공하는 리스트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기업은 아예 없었고.” ... 참여자 D³

참여자C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업체에서 실습학기제를 진행했다. 같은 일을 다른 지위로 이어서 하게 된 케이스이다. 그러하기에 전공지식과 직무 내용의 일치성이나 지원금 제공에 대한 충족감이 있다. 그러나 실습 전 학교나 기관으로부터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 받은 것은 없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던 곳이니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나 실습조건 등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학교는 참여자C와 실습기관의 관계를 모르던 상황이었음에도 정보제공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나 실습기관 어디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3. 실습기관 규모나 직종 등 정리된 통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정확하겠으나, 그런 자료는 찾지 못했다. 통계자료 유무와 상관없이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참여 학생들의 증언이다.

“저는 없었어요. 저희 회사도 없었고 학교 자체에도 없었고...이 업무개시일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뭘 준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교육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예 없었고 다른 친구들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 참여자C

현재까지도 이 실습기관은 실습학기제를 진행하지만 사전교육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듣고 오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면접자가 실습 진행 기간 중 학교에서 중간점검을 나온 적은 없었는데 그것 또한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런 조건이다 보니 서류상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지만 프로젝트성 업무를 진행하는데 참여하는 형태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8시간이 넘게, 어떤 날은 짧은 시간 실습 학습을 한다.

노동시간이 불규칙한 형태이니 시간 형태로 실습지원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 임금제 방식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었다.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의 열정페이를 막고자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규정과 현실은 이렇게 따로였다.

참여자C는 실습학기제 참여 만족도는 높지만 실제로 자신의 현장실습은 ‘근로 중심의 노동력 활용’에 가깝다며, 실습학기제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인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지원금제도로 회사 비용이 줄어들어 보다 쉽게 인턴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 참여자 C

지원금의 힘으로, 기업 비용 절약의 기회로 연계 되는 실습학기제에서 학생들이 노동을 제대로 배우고, 권리를 보장받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참여자C는 학교가 충분하고 적절한 실습기관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 개선사항으로, 학생들이 실습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그 다음 개선사항으로 제기했다.

참여자C보다 한 해 뒤에 실습학기제에 참여한 참여자D는 전공이 신설학과라 딱 맞는 곳이 없어서 유관성을 고려하여 IT계열로 살펴보았으나 학교에서 준 리스트에는 IT쪽이 별로 없었고 그나마 선택하여 간 곳은 직무가 딱 맞지는 않았다. 학교 규정상 정규 학

생의 경우는 4개월로 끊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4개월의 실습학기제를 이수했다. 경력과 실무능력향상,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기대로 실습학기제를 선택했지만 어느 것도 충족되지 못했고 회사 생활에 필요한 팁 정도를 익혔다는 정도가 실습학기제를 통해 얻은 경험이다.

“사소하게는 제 상사분이 대표님한테 뭔가 건의를 하거나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대화방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고객을 어떻게 전화로 대하는지 그런 거 이제 들으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정말 사소하게는 모든 전화를 다 메모해야 된다는 거.”
 … 참여자 D

실습 프로그램, 업무에 대한 운영계획서라는 것은 자신도 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참여자D는 4개월 단기 계약 직원처럼 일했다고 자신의 실습학기제 기간을 규정했다.

“업무는 월요일에 주간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다른 직원 분들 다 모여서 하는 회의였는데 각자 이번 주에 뭐 하는지를 쪽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어떤 업무를 하고 싶냐고. 그럼 이제 이걸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맡게 되고. 혹은 제가 꼭 해야 되는 SNS마케팅 이런 것이 있으면 강제로 그 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 참여자 D

참여자D가 실습학기제를 한 곳에는 실습생이 2명씩은 있었다고 한다. 실습학기제 기간 동안 참여자D는 8시간 근무에 9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받았다. 규정상 학교와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실습지원비는 대부분 학교가 지급하는 지원비는 40만원으로 동일하고 실습기관이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실습학생이 받는 액수가 달라진다.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니 학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40만원은 이게 기업에서 주는 돈이고 학교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나마 많은 편이었어요. 현장실습회사 리스트에서 무급도 있었고. 무급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 회사가 많은 편이었어요.” … 참여자 D

참여자D는 실습학기제 후 인턴 경험도 쌓았는데 실습학기제에 비해 인턴은 임금을 많이 받았다. 또한 업무경험으로 봤을 때도 현장실습은 큰 의미가 없는, 의사소통이라든가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것만 얻었다며 굳이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참여자D는 실습학기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경험이라도 하는 게 지금 현 시대에서는 낫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실습학기제를 통해 경험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적절한 실습비가 지급되고 전공과 연계된 충분한 실습기관이 제공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구분	참여자 C	참여자 D
실습기간	2019년 2개월	2020년 4개월
학과, 전공	교육공학	서비스디자인공학
사전정보나 교육 여부	사전정보제공과 교육 모두 없었음	실습기관, 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보지않은 영상교육이 있긴 함
전공과 직무 연관성	연관성 있음	연관성 없음
졸업필수 여부	필수 아님	필수 아님
취업연계 여부	아르바이트, 취업 연계	연계 안됨
실습비 지급	프로젝트, 포괄임금, 월120만원	하루8시간, 주5일, 월 90만원

3)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으로 개정된 시기

2019년에 실습학기제로 실습을 진행한 후 실습기관에 취업한 상태인 면접자는 규정이 개정된 지금 상황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지금 오는 실습생들에 대해 회사에서 산재보험은 가입하는지?) 저희는 아마 프리랜서로 3.3% 떼가는 그거 있잖아요. 4대 보험 안 들고. 그걸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3.3% 떼는 걸로...” … 참여자 C

학교에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질문을 했더니 면접참여자C는 “학교에서는 사실 관리가 거의 안된다고 보라”는 답변을 했다. 그런 상황은 다른 면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6주간 실습학기제를 신청했던 참여자E는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실습기관이 없어서 연계전공으로 실습학기제를 다녀왔다. 전공과에서는 교수나 선후배의 관계를 통해 연계하여 추천받고 인턴을 가는 경우가 많다. 학교 곳곳에 실습학기제를 모집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참여자E는 다른 학과 친구가 실습학기제를 하고 나서 경험이 좋다며 추천해서 실습학기제를 신청하게 됐다. 현장실습기관은 인턴보다는 경쟁률이 좀 더 낮아 합격률도 높고 학교에서 매칭을 시켜준다는 것, 프로세스가 좀 더 편하다는 점이 인턴보다 실습학기제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했다.

그러나 실습학기제에 참가하는 실습기관들은 규모나 재정적 측면에서 큰 기업이 많지 않고 참여자E가 본 기관들에는 대부분 스타트업이 많았다. 다른 과의 경우도 안정적인 기업들이 실습기관으로 신청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습기관에서 경험을 쌓아 다른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참여 학생들도 있다.

참여자E는 스타트업 실습기관에서 전체 인원 40명 중 8명이 현장실습생(인턴)으로, 부족한 인원을 메우는 존재가 된 자신들을 발견했다.

“제가 6주를 일했는데 2~3주 만에 이제 중간에 어떤 분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공백을 저 혼자 메워야 했던 건 있었어요. 저 말고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제 상사를 인수인계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참여자E는 실습학기제 6주 후 다른 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을 한 달, 또 다른 실습기관에서 5~6개월 정도의 인턴과정을 거쳤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학교의 제도로 실습학기제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현장실습이 아니라 학교나 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수교과목처럼 ‘실습학기제 이수’가 졸업의 조건인 경우다. 참여자F·G·H가 그런 경우다. 세 참여자는 학교와 전공이 다르고, 실습학기제 이수 시기는 2022년과 2023년으로 최근이다.

그 중 참여자F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으로 변경되기 전인 2020년에 1차 실습학기제를 이수한 경험이 있다. 2022년 진행된 실습학기제에서는 월 180여 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받았지만 2020년에 다녀온 1차 실습학기제에서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0여 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 너무 적게 받았어서 저는 그나마 최저를 받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건축은 워낙 적게 줘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때 그냥 이상하다고 못 느꼈던 게 그 가격이 다른 애들이 다 그 정도고 이랬어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를 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습지원비 지급에 대한 강제규정이 생기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아니니 실습지원비는 인상이 되었다. 그러나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의 업무는 2022년에 다녀온 실습학기제에서 만났다.

“그냥 제 자리에서 제 책상에서 열선을 쓰는데, 스티로폼을 열선으로 태우면 연기가 올라와요. 그냥 제 개인 마스크 쓰거나 그냥 할 때도 있고. 본드도 많이 쓰고..”

실습학기제를 다녀온 후 참여자G는 자신이 되게 운이 좋았다고 표현했다. 현장실습을 나간 기업 자체가 매년 두 명씩 정기적으로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고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도 컸다. 안전보건 사전교육도 실습기관에서 받았다. 그럼에도 참여자G는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을 진행해주는 게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있고 실습 학생들이 업무 보조하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분석할 시료는 많은 편인데, 메인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 이제 8주를 하고 희망하는 실습생에 한해서 1년 연장 계약을 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1년 채우면 경력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현장실습을 통해 일정 기간의 교육·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정규직 채용 시 위험 부담과 초기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채용

후 재교육 없이 실무 투입이 가능한 것이 실습기관의 참여 목적 중 하나' 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습학기제의 기본 목적 중 교육을 통해 전공실무능력 향상은 실현되고 있지 않는데, 채용이 어려운 환경의 기업에서 업무 보조자를 채우거나 단순 업무 자리를 메꾸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규정에서조차 이를 권장하듯 기업을 중심으로 한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니 실제로 제도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G의 학교는 학교설립목적이 인력양성을 위한 곳임을 표방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꾸준히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던 곳이다. 실습학기제 진행 점검을 위해 담당 선생님이 직접 기관으로 나오는 사례를 이야기하며 학교의 관리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편이라고 했지만 필수이수가 아니라면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선택이라고 했으면 솔직히 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지금 시스템 그대로 간다 하면 선택이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현장실습기관 선택지 자체가 좁고,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실습기관도 있고, 적은 실습비, 보조 업무자라는 위치 등등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여자H는 IPP 장기현장실습을 다녀왔다. IPP 장기현장실습은 일학습병행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IPP 현장실습에도 단기와 장기가 있고 참여자H는 장기현장실습을 6개월 다녀왔다. 실습학기제는 교육부가 주관이라면 일학습병행제를 주관하는 부처는 교육부와 노동부이다.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여 '기업은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되는 제도이다. 2017년 교육부가 발간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적힌 목적과 다르지 않다. 교육부의 규정 설명에 의하면 IPP 현장실습이 실습학기제에서 정한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할 수 있다.

참여자H는 졸업필수이기도 했지만 경력이나 실무향상을 기대하고 IPP 장기현장실습을

신청했다. 신청했던 IPP 장기현장실습은 취업연계 실습임에도 참여자H에게 제공된 실습기관 정보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참여자H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지만 정보를 정확히 알긴 어려웠다. 참여자G처럼 참여자H도 선택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적었고, 직무전공과 일치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보니 실습기관에서의 업무는 전공과 거의 상관이 없었다.

“저희 전공을 따지면 통신사 쪽이나 아니면 개발자 쪽 기업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기업이 아예 없어요. 그냥 다 IT쪽 분야면 묵여넣은 것 같아요.”

참여자H는 현장실습을 끝내고 채용 연계가 되어 2024년 4월 현재 6개월 계약직 직원이지만, 실습기간 중 평가가 어떻게 되어 취업 연계가 되었는지는 모른다. 실습생에 대한 평가표를 회사와 학교만 공유하고 학생은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어떤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는지를 모르니까 뭐 일을 할 때도 어떻게 성과를 내야 하는지...그냥 3개월 정도면 교수님이 ‘성과를 낼 때 됐지’했는데 솔직히 인턴(실습)3개월이 무슨 성과를 내요.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평가결과도 못 봤어요. 그냥 학점으로만 나오는데 패스-논패스 과목이라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지만 졸업 필수조건이었던 세 참여자 모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의 차이를 알지 못했고, 자신이 참가한 실습학기제의 유형을 알지 못했다. 사전교육으로 받아야 했던 안전보건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이 모두에게 실시되지는 않았다.

다행히 규정에 의해 산재 가입이나 실습비 지원 조건이 실습기관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강제되고 있다. 다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학습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있다 보니 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어떤 이유 때문에 실습비가 적은지 알지 못했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도구사용이나 경험을 많이 해보는 대가로 실습지원비가 적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습지원비를 제대로 받는 일과 도움이 되는 실습기회를 가

지는 일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 참여자 F·G·H가 제기한 실습학기제의 개선의견을 보면 알 수 있다. 필수 과정이기에 실습학기제를 이수한 참여자 셋은 적절한 실습비와 제대로 되고 충분한 실습기관 마련을 우선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제기했고, 덧붙여 실습기관 평가에 학생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등 학교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참여자는 실습학기제 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임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렇지만 그 좋은 기회는 구조적으로 기관 내에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의 역량과 조건에 따라 달라졌다. 업무에 따라 멘토가 배정되어 있었고 실습 학생들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배정되었다.

“학생들은 아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초반에 뭔가 연구하는 방법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최소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좀 해매는 거 없이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예 없었어서. 그래서 초반부터 바로 자료조사나 일하는데 투입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 참여자 I

가장 최근에 실습학기제를 이수한 참여자는 현장실습의 학점이 전공학점에 포함되는지 등의 여부를 알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다. 초기 실습학기제의 내용을 학교조차 잘 몰라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2023년에 실습학기제를 이수한 참여자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학과 교수님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 학기담당 현장실습 담당자분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만약 학기 중이면 수강 신청이랑도 연결이 돼서… 그래서 내가 전공을 몇 학점까지 인정받는지를 미리 모르면 수강 신청도 꼬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학생이 해결하려고 계속 전화하고 이래야 돼요” … 참여자 I

구분	참여자 E	참여자 F	참여자 G	참여자 H	참여자 I
실습기간	2022년 6주	2022년 4개월	22-23년 8주	2023년 6개월	2023년 6주
학과, 전공	의류환경학	건축학과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행정학과

구분	참여자 E	참여자 F	참여자 G	참여자 H	참여자 I
사전정보나 교육 여부	제시된 모든정보와 교육 받음	실습기관, 조건 제공 받고 교육받음	실습기관, 조건, 주차별커리큘럼, 교육받음	정보제공 받고 일부교육 받음	실습기관, 조건 제공 받고 교육받음
전공과 직무 연관성	연관성 적음	연관성 있음	연관성 있음	연관성 적음	연관성 있음
졸업필수 여부	필수 아님	필수 요건	필수 요건	필수 요건(IPP)	필수 아님
취업연계 여부	연계 안됨	연계 안됨	연계 안됨	취업 연계	연계 안됨
실습비 지급	하루 8시간 주5일 6주264만원쯤	하루 8시간 월 180만원	하루 8시간 주5일 월 40만원	하루 7시간 주5일 월 180만원	하루 8시간 주5일 주46만원

3 참여자들이 겪은 실습학기제

1) 싼 노동력

특정 과에서는 전공 이수를 위한 의무실습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실습과 실습학기제는 같은 실습이지만 다른 법이 적용된다. 실습학기제는 공통적으로 실습 시간, 실습조건, 실습지원비, 안전에 대한 보장 등을 전제하고, 학생들이 사전 교육과 정보를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의무실습은 전공에 따라 적용받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선택 과정과 의무 과정 자체의 차이가 만드는 다름이 있다.

인터뷰에 참가한 이들 중 의무실습과 실습학기제 두 실습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B는 그 과정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학기실습제인데 저희는 보조 인력으로, 절차가 없이 했다는 거. 내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심리적 분위기적으로 소외되는 거. 의무 실습은 첫 날은 어떻게 할 거고 둘째 날은 어떻게 하고 진짜 교육을 받는 느낌이었고, 프로그램 기획 등 절차가 분명했어요.”

참여자D는 현장실습이라는 경험을 얻는다는 이유로 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화가 났다.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학습이 아니었고 노동이었다.

“그 당시에 같이 학교 다니던 3학년 동기들하고 회사들이 어떻게 돈 이거밖에 안내냐 막 욕했죠. 우리가 노예냐. 무급인 회사들은 학교에서 주는 거 40만 원만 받게 되는데. 회사들이 악랄한 것 같아요. 빵 원 주는 회사들은 (제 생각에는) 대학생 너넨 내가 경험을 주는 거니까 안줘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는 속도가 되게 빠른 친구인데 회사에서는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그런 걸 하루에 몇 개씩 하게 해가지고. 그냥 기계처럼 그것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은 되돌아봤을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회사에는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스스로 막 ‘나 노예 같다. 이거 천천히 하고 있으면 왜 예전만큼 속도가 안나냐고 뭐라고 하고...’ 그러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디자인 노예라면서 공장 온 것 같다고 했어요. 막 찍어서 만들어 내는 식의 공장에 온 거 같다고.” ... 참여자 D

2) 권리의 부재

학생들은 경력 및 실무능력향상에 대한 기대와 취업 연계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실습학기제를 신청한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경험으로 얻은 것은 ‘함부로 해도 되는 노동취급’이었고 눈치를 익히는 것이었다. 정규노동의 빈자리를 실습학기제로 메우기도 했다.

“단순한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실습을 많이 이용하는 거 같아요. 저희 회사도 갑자기 많이 필요하다 하면서 여러 분을 한 번에 뽑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건 진짜 단순 업무들이 많이 필요한 때. 현장 실습은 그렇게 엄청 대단한 진짜 실습이라고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경험 한 줄 정도. 운이 좋아야 진짜 연계가 돼서 잘 이어질 수 있을 거고.” ... 참여자 C

“저희 기억은 그래요. 이 친구는 업무 중에 갑자기 팀 변경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알바처럼 우리를 쓰려고 한 거라서. 업무시간이나 업무 범위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같이 실습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 참여자 D

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나 실습기관은 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다. 실습기관에는 일을 시키는 사수로서 담당자가 아니라 교육하고 실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담당자를 뒀다. 실습기관의 직원들은 자기 일로 바쁘다. 맡길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실습 학생들은 방치되고 꺾다놓은 보릿자루가 되기도 하고 바쁜 일터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실습기관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이 늘어날 뿐이라 인식하기도 한다. 학습으로 제공되는 실습학기제라는 취지를 주 업무로 맡을 실습기관의 학습 담당자는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그냥 기본적인 교육이랑 회사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 이런 것들 위주로 OT를 진행하고. 그런데 사실 초반에는 거의 방치인 거 같아요. 계획서대로 안 하고 안 가르쳐줘요. 제 기준에는 한 달 정도. 자기 일하면 바쁘니까 완전히 케어 해 줄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일단 가르쳐주지 않고 먼저 일을 시킨 다음에, 하면서 모르는 걸 물어봐라.” ... 참여자 H

“지금 다니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저는 현장실습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총원이 됐는데 손은 그만큼 없다 보니까 제 일은 훨씬 많이 늘어나서. 회사 임원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저렴한 값에 비싼 노동력들을 데려오고, 이 분들이 계속 같이 간다고 하면 초반에 교육비용이 조금 빠지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회사에서는 진짜 좋아할 제도라고 생각해요.” ... 참여자 C

3) 학교의 관리 미흡, 부재

학교는 실습기관을 선정하는 것부터 학생들의 실습 중간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실습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교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졸업 요건으로 넣어놨으면 제대로 된 기업을 학교가 책임지고 좀 설득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보든가. 그것도 아니고 학생보고 알아서 기업을 구해오라고 하는 정도이

니까.” … 참여자 H

면접자들은 학교가 취업률 통계가 중요하니 매칭률을 높이려고만 하고 그다지 실습학기제 운영에 관심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행정적 처리 일정을 공지해주긴 하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전공 인정 등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서 고생한 경험들이 있다.

게다가 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실습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전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방식과 내용이 모두 문제다. 사전 교육을 통해 실습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와 상황대처 방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거였어요. 사전직무교육 참석이 필참인데 온라인으로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요… 한 8시간인가 했는데 그냥 켜놔던 것 같아요 보지는 않고.” … 참여자 D

그래서 현장 실습을 하고 왔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고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 등의 연락을 많이 받아야 했던 참여자도 있었다.

또 대면 업무가 필수인 곳에서 코로나 같은 질병이 발생할 때 규정상 재택실습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실습 학생은 불편한 입장에 놓이기도 했다.

“사실 재택으로 전환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다보니까 편의를 좀 봐주셨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도 말씀드리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학교측에서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공유가 좀 더 되면 좋았을텐데. 이미 코로나 3년 차인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책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죠 쉬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이게 뽀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피해준 것 같고)…”

… 참여자 E

면접자들의 얘기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서 학생들의 제기가 많은 경우,

그 실습기관을 블랙기업으로 지정하여 다른 학기에는 등록하지 않는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런 실습기관이 다음 학기에 다시 학교가 제안하는 실습기관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평가 과정에 실습 참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평가절차도 간단하고 형식적이라서 제대로 실습기관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 주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커리큘럼이 있다는 걸 그거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을 짜서 자기들이 이걸 주차별로 개네들을(학생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를 아예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돈 주니까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 참여자 F

4) 포기하는 경험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실습기관의 문제이기도 하며, 실습기관을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학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선택할 기준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으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른 전공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공고에 있는 것만 보고 지원을 하니까 막 중간에 잘린 친구들도 있었고, 별의별 케이스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본인이 관두는 경우도 많이 봤고.” ... 참여자 C

실습학기제를 통해 직장, 노동에 대한 부정적 기억만이 남은 실습 학생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어느 때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 알지 못한 채 실습기관에 방치되기도 한다. 도움을 요청해봤자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사전 판단도 존재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꿈이 되게 많은 애였는데, (실습기간 중) 출근했는데 하루 아침에 저보고 그만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준으로 교수님 만류에도 전공 다 버리고... 처음 만난 사회였고, 근데 처음 만난 사회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쪽 업무는 내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20대를 거의 많이 잡아먹었죠.” ... 참여자 B

“그냥 ‘상사가 좀 괴롭혀서 내가 관뒀어’ 라고 밖에 안돼서. 그 당시에는 ‘끈기가 없네’로 비춰졌어요. 아마 친구는 그냥 학기 날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되게 애매하게 (실습 기간의) 1/3? 절반? 안했을 때 도망가는 이런 느낌. 그냥 휴학할래. 약간 이렇게 됐거든요... 뭐가 문제인지부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 참여자 C

실습지원비의 수준과 실습교육의 질이 시소는 아니다. 실습지원비가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내려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같이 높아지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통해서 최저의 선을 정해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시소놀이가 지속되고 있다.

“제가 선택지 자체가 몇 군이 없다보니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극단적이었어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서 40만원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 다른 지역의 기업에서 최저시급으로 해놔서 200 얼마로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세부 내용을 보니 단순 작업. 제 입장에서는 주어진 선택지가 배우고 덜 받느냐,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아닌 곳에서 더 받고 일하냐.” ... 참여자 G

5) 피해는 학생들의 몫

면접자들은 다른 곳에서 실습학기제를 진행한 친구들의 경우를 통해서 자신은 피해갈 수 있었던 문제도 알고 있었다. 기초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나 짧으면 4주, 길면 6개월을 선택한 실습기관으로 가서 기간을 완료해야만 학점이 부여되며 실습기관의 문제라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학생이 입게 된다.

참여자A에 의하면 실습이 졸업 필수는 아니었지만 실습을 나감으로 학점을 받고 졸업전을 대신하게 된다고 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실습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거나 다른 참여자의 케이스처럼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학교로 돌아와 졸업전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한다. 예정한 기간보다 짧은 시간에 졸업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허겁지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웬만하면 실습 기간은 채우려 노력한다고 했다.

“그 후배는 나이 많은 대리님이 갑자기 고백해가지고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관둘 수가(없잖아요) 어쨌든 기간을 채워야 점수를 학점을 따잖아요. 학점을 따려면 채워야 하니까 관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남자인 친구에게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 참여자 F

학생들은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통해서 얻거나 학교가 제공해주는 것 외에는 가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학교가 선정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신뢰가 있다. 믿을 건 교수님뿐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회초년생이자 약자인 자신들이 안전하게 노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지 두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학교가 제시해주는 기관이기에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런데 학교도 정부도 이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익히고 배우고자 하는 것은 경력이 되는 경험이고 학교에서 해보지 못한 일 경험을 해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를 낳지는 못하고 있다.

“아마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 만족하는 학생들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배운 거는 엑셀 능력. 엑셀 능력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내심?... 불만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 별로 없고 이게 학교졸업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원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게 아니예요. 떨어지면 다음 학교에 가야 해요. 그러면 계속 졸업이 늦어지고 그리고 현장실습을 가도 학비를 내야 되거든요 똑같이. 돈은 돈대로 나가고.” … 참여자 H

6) 전공과 무관한 실습업무

실습학기제의 기본적인 전제가 전공과의 연관성이다. 전공의 범위를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연관성이다. 설문을 통해 현장실습 중에 수행한 직무가 전공과 일치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전공과의 일치성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 면접참여자 중에서는 비대면 설문지에는 현장실습 중에 수행한 직무가 전공과 일치한다고 답했으나 답변과정에서 실제로는 전공분야에 속해서 일했을 뿐 본인의 업무를 직무관련성 있다고 보기엔 어려웠다.

건축학과인 참여자F는 건축사무소로 현장실습을 갔기에 전공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실습기관에서 진행한 업무는 이미 학교에서 해왔던 일의 반복이어서 현장실습을 통해 배워야 할 새로운 것들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모형을 많이 만들었고, 현장도 따라가서 보고 하긴 했는데 그런 게 많지 않아서… 회의도 들어갔었어요. 다만 회의 들어갈 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먼저 주고 회의를 들어가게 되면 저도 뭔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배운 게, (제가) 한 게 모형밖에 없긴 하지만, 실무로 한 건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귀동냥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 참여자 F

전공의 범위를 넓게 보고 비슷한 계열로 등록된 실습기관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었기에 전공범위 내의 기관이라고 판단했던 경우도 있고, 애초에 전공으로 갈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복수 전공으로 실습을 가기도 했다.

계열이라는 더 넓은 범위를 기준으로 하거나, 약간의 연계지점이 있으면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한 경우를 보면 실제 설문조사에서 직무연관성이 있는 실습 업무였다는 답변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참여자D는 실습 직무가 전공과 일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학과에 맞는 실습기관이 없어서 비슷한 계열로 선택했다며 전공과 연계된 충분하고 적절한 실습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전공 실무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실습 학기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추가 의견을 남겼다.

참여자B와 F는 전공 영역이지만 실제 하고자 하던 직무까지 나아가진 못했고, 참여자E와 H는 전공과 실습 직무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저에게 전공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진짜 보조... 디자인 같은 거 온라인으로 그래서 캐드로 그러서 프린트해야 할 일 있으면 그런 거 저한테 간소한 거 실습시키는 게 약간 전공 관련된 것들이었고... 부자재 정리나 샘플 정리나 원단 정리 같은 거 위주로 전공과 조금 무관한 일들을 많이 했었고...” ... 참여자 B

“전공으로 현장 실습 지원하는 건 딱히 없고... 열 군데에서 1순위 2순위를 뽑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상 6개월을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고 일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실습을 나간)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뭐 관련 교육을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 프로그램을 제가 수강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친숙도도 좀 있었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걸(실습지원비) 보장한다는 게 있었어요.” ... 참여자 E

“기업마다 정해진 학과의 인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실습기관)여기서 전공이랑 겹치는 건 한 5% 미만이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전혀 써먹지는 않죠. 왜 우리 과를 여기서 뽑나 조금 의문스럽기는 한데... 그나마 정보 통신하면 그래도 컴퓨터 이런 거 배우니까...” ... 참여자 H

“전공 무관 지원자를 받았었던 (실습기관이었던) 거라서요... 업무계획을 큰 주제만 정책 연구라고 주시고 1주차, 2주차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본인이 짜야 했던 그런 상태였어요...” ... 참여자 I

7) 그럼에도 실습학기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다수가 취업과 학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취업으로 연계되는 실습학기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공 경험을 높여서 이후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한

다.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러나 실습학기제의 경험이 오히려 자신감 상실, 좌절로 이어져 전공을 바꾸거나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학교 입장에서도 취업 연계를 해주면 좋은 거고, 학생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공인되어 있는 그런 단체 혹은 기업이란 하는 거니까 안전해서 좋고. 대부분 학생들이 엄청 거창한 걸 바라고 현장실습을 하지 않아요. 사실 돈을 원하면 진짜 인턴을 하는 게 낫거든요. 업무상으로 진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인턴이 훨씬 낫기는 하죠,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학점을 따면서 일을 동시에 하려고.” … 참여자 C

“경쟁률이 아무래도 좀 인력풀이 좁은데서 뽑으니까 좀 더 합격률도 높고 웬만하면 학교에서 매칭을 시켜준다고 들었거든요. 1순위, 2순위 탈락하면 또 제안을 해준다는 소리도 들었어가지고…” … 참여자 E

“저는 인턴을 하고 그 후에 현장 실습을 또 한 거였어요. 약간 다다익선으로. 워낙에 취업 시장이 힘들다보니까. 점점 실습을 하는 학년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 참여자 C

“그래도 실습학기제가 필요한 건 개인이 인턴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데 어쨌든 학교에서 기회를 쉽게 해주는 거잖아요.” … 참여자 D

“장비가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 학교 같은 경우는 실습 한 과목당 최대 2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긴 한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근데 현장실습 자체에서는 그런 제약 조건이 훨씬 덜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직접 돌려보기도 하고, 회사에서 적용할 때 약간 팁이라거나 그런 게 훨씬 더 강하니까. 취업에서 제일 필요한 건 일머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진짜 직접 일 해보는 거에서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참여자 G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들이 말하듯 ‘일머리’를 배우기 위해, 인턴은 구하기 어려우니 경험의 기회라도 잡기 위해, 혹시 운 좋게 취업과 연계될 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실습학기

제가 필요하다면, 지금의 실습학기제가 현장실습을 통한 수업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구분	졸업필수 이수여부	1. 실습 선택 동기	2. 실습 선택 동기	내 현장실습은	실습학기제 필요성	실습기간
참여자 A	필수아님	취업 연계	경력 및 실무능력 향상	실무교육, 실습	현장실무를 익힐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2011년 6개월
참여자 B	필수아님	취업 연계	경력 및 실무능력 향상	노동력 활용	취업연계, 직무경험 등 좋은 점이 있으나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환경에 학생들을 방치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권장하면 안된다	2015년 4주
참여자 C	필수아님	전공과 직무 일치성	실습학기제 지원금	노동력 활용	지원금 제도로 회사 비용이 줄어들어 보다 쉽게 인턴 채용이 이루어진다	2019년 2개월
참여자 D	필수아님	경력 및 실무능력 향상	학업성취도 향상	노동력 활용	나름 실무를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	2020년 4개월
참여자 E	필수아님	경력 및 실무능력 향상	적성 및 관심 분야	노동력 활용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습경험은 직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22년 6주
참여자 F	필수	졸업 필수 요건	경력 및 실무능력 향상	노동력 활용	취업 전 실무 경험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2022년 4개월
참여자 G	필수	전공과 직무 일치성	졸업 필수 요건	실무교육, 실습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경험한다	22~23년 8주
참여자 H	필수	졸업 필수 요건	경력 및 실무능력 향상	노동력 활용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없다	2023년 6개월
참여자 I	필수아님	적성 및 관심 분야	경력 및 실무능력 향상	노동력 활용	학생 신분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2023년 6주

IV 제언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1

실패부터 정확히 파악

1973년 현장실습이라는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사이 현장실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마다 진행하던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표준화하기 위해 운영규정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그리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피해가 드러나고 문제가 확인되면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각 주체들(학교, 실습기관, 학생, 정부)에게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운영규정이 안착화 된다고 하여 현재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운영규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의 과정 자체가 내포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은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습 학생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최악의 경험이 되기도 했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실습학기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자.

그 길을 찾기 위해 제대로 된 정확한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 별로 흩어진 채 모아진 정보가 없다. 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실습기관의 문제에 대해 많은 제기가 있었지만 실습 학생은 계속 바뀌니 문제가 다시 드러나도 그걸로 끝이다. 전공과 무관한 실습기관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분야에 어떤 실습기관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신생 과여서 실습기관이 없어서 실습 학기제 이수를 위해 엉뚱한 곳으로 실습을 나가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들은 설문조사 답변으로는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가 77점 정도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 면접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된 일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면접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전공별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을 나가야 하는 기준, 나갈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한 준비없이 취업을 위해 모든 과에서, 가능하면 많이 나가면 좋다는 인식이 전공과 상관없는 직무에 학생들을 밀어 넣게 된다.

전공에 따라 어떤 실습기관들이 제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를 통해 대학 정보공시가 되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교육부 공시에는 자율현장실습학기제가 제외되어 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조사의 내용은 여전히 한계적이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공시되는 내용도 현장실습기간,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산재보험 가입여부 등 뿐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정에서도 실습기관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격이 미달되는 기관들이 계속 등록되어 있거나, 실습기관의 부족을 이유로 문제가 있어도 눈감아 버리는 상황과도 비슷한 모양새이다.

더 늦기 전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 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들과 실습기관의 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학교별 의무이수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실습학기제는 실습을 통한 학습이 필요한 경우라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필수과정이 되는 순간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해도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실습학기제를 졸업 필수 이수 규정을 둔 학교라면서도 제대로 된 실습 학습이 가능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졸업 필수 과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피해를 낳을 뿐이다. 졸업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실습학기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아까운 시간을 죽이게 한다.

실습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미흡함,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사전 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도 했다. 의무이수에 배치는 하지만 교육의 내용도 방식도 성의가 없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전 교육으로 배치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다면 교육해야 할 내용의 기준이나 방식에 대한 권고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실습기관의 문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

실습 학생들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 학습이 되기보다는 노동이 되고 있고 부족한 인원을 현장 실습학생들이 채우기도 한다. 커리큘럼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법으로 규정한 최저임금 지급기준을 이런 저런 지원금을 끌어서 채우면 문제가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설립과 담당자 역할 배치, 실습기관은 정확한 운영계획과 담당자 역할 배치 등이 매칭되어야 실습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다. 단순 노동력으로 취급되는지는 배워야 하는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 배우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대학의 경우는 교육부의 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을 이수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습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필요하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실습기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담당자가 현장을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실습기관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최소한으로 제시되어 있는 규정을 미이행하는 경우 제재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도 학교의 권한으로 맡겨져 있어서 참여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실습기관'으로 제기했다 해도 다음 학기에 다시 실습기관으로 등록되기도 한다. 특히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는 제재나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낱낱이다.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실습지원비 지급여부만 확인될 뿐, 지급 액수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실습기간 내 25% 이상의 교육이 시행될 경우 교육시간 비율 등에 따라 실습지원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산재보험 미가입도 확인되지만 이후 시정조치들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

실습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여겼지만 도움 자체를 요청하지 않은 실습학생들이 답변자의 절반을 넘는다.

90 제도 운영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한 시정조치와 개선이 학교에
계단 맡겨져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3

현장실습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이번 조사는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대학생들은 실습학기제, 일학습병행제, 인턴, 일 경험 등 다양한 이름의 실습을 진행한다. 학점이 부여되기도 하고 비교과인 경우도 있다. 학생 개인이 신청하고 판단하여 진행하는 모든 현장실습 유형에 대해 검토할 수 없지만 정부 차원으로 추진되고 양성되고 있는 현장실습 과정에 대해서는 연관하여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제도마다 추진하는 주무 부처가 다르고, 적용하는 규정도 다르다.

현장실습이라는 직업훈련이자 고등교육의 한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제도는 마련되기도 하고 통합 폐기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코스가 되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취업의 문을 향해 다시 달려가고 있다. 취업 자체가 어려운 노동시장의 조건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취업률을 대학성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도 문제다.

그래서 대학은 기업의 인재를 키워주는 인큐베이터이자 산업변화를 이끌어 내는 배양기이며 기업인력 양성소로 취급되기도 한다. 정부의 대학 지원금은 취업률에 따라 달라지고, 특화 학교라는 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맞춰 학습 과정을 재편하기도 한다.

깊이 있는 사유를 배우고 펼치는 대신, 경제와 생존을 위해 노동력의 교환가치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대학의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지도 현장실습의 확장된 논의가 될 것이다.

4 학생들의 의견확인 참여 보장

제일 중요한 것은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실습학기제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실습 학생들, 실습을 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 실습학기제에 대해, 더 나아가 현장실습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실습 학생들이야 말로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실습학기제 이수를 위한 신청과정부터 평가까지 각 단계에서의 어려움이나 현실과 규정의 괴리, 문제점 등이 왜 발생하는지를 겪기도 했고, 들어서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교과과정으로 시행하는 실습학기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답변자들 중 62.9%가 자신이 참여한 실습학기제의 유형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런데 유형을 안다고 답한 경우도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알고 답한 것은 아님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자신이 참여한 실습학기제의 유형을 모르는 경우는 더 다수라고 봐야 한다. 표준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유형에 따라 많은 조건들이 달라짐에도 기초적인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제공되지 않는 점은 학생들의 권리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다보니 실습학기제 운영과정 내내 핵심적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이나 평가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학점과 취업을 위해 진행되는 실습학기제이니 학점 이수만 잘 되도록 하

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 문제 있는 실습기관을 걸러낼 수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실습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경험 평가를 통해 실습학기제 존재 방식이나 운영방안 모든 것을 재검토해볼 수 있어야 한다.

실습학기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던 이들의 절반에 가까운 47.1%는 현장실습기관 선택 관련 불충분하고 불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장 문제라고 꼽았다. 그리고 근로중심의 업무가 되거나, 계획서와 다른 실습업무를 주는 경우를 합치면 76%의 참여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습기관이 전공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과 실습시간만큼 적절한 실습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습 참여 학생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개선점이다.

실습수업이라고 말하지만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기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실습을 나가고, 다수가 실질적으로는 전공과 무관한 곳이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 학습이 아니라 노동했다고 느끼는데도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을 위한 자소서 한 줄을 위해, 경험할 기회조차 경쟁해야 해서 선택하는 실습학기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실습이 어떻게 가능한지, 왜 필요한지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반영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습노동의 현장에서 그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꺾일 때도 그들은 학점과 취업 때문에 항의하지 어려운 위치의 약자로 존재한다. 그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5 다시 이유 묻기

왜 대학생 현장실습(실습학기제)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기 시작 하자.

실습학기제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되 그 과정에서 권리와 안전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경험치를 높이겠다는 목적은 어떻게 가능한지 다시 제도와 현실을 비교하며 살펴보자.

교육은, 대학은,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실습학기제를 참여하는 학생들은 '경력과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동기를 보면 54.3%가 경력과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어서 취업연계까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큰 동기였던 경력과 실무능력 향상에 대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답변자들은 68.4점 정도의 충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면접 참여자들의 구체적 이야기를 통해서 충족도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력 향상은 자소서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기회였다는 의미로, 실무능력 향상은 전공과 관련한 것보다는 주변적인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더 많았다. 직장에서 관계맺

기, 눈치껏 일하기, 전화받는 기술, 상사에게 보고할 때 방법 등을 포함한 일머리, 효율을 높이는 방법 등 전공과 무관하게 직장생활 요령들이 그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실습학기제의 목적과 괴리되는 실습학기제로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실습학기제가 지금 당장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허덕이는 인력난을 채워주는 기회가 되어서도 안되고, 대기업을 위해 미래에 쓰여질 훈련된 노동력을 만드는 과정이어서도 안된다. 실습 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하면서 실습학기제의 현실을 파악해나가자.

다시 이유를 물어야 출발점이 보인다.

참고자료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2023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명

본 설문조사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처리되어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

대학생현장실습 대응모임

(사)김용균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련 문의: unicoop2023@gmail.com]

조사동의표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동의를 하신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 및 설문 대상자 설명

1. 현장실습학기제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 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됩니다.
2.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에 방점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이며,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에 방점을 두고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현장실습학기제입니다.
3. 본 설문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분들은 설문 대상이 아닙니다.
 -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7. 귀하는 대학 재학 중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 8로
- ② 참여 중 → 문 8로
- ③ 없음 → 문 7-1로

7-1. 현장실습학기제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②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 ③ 하고 싶지만 대상이 아니어서
- ④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되어서
- ⑤ 적절한 실습 기관을 찾지 못 해서
- ⑥ 신청했지만 떨어져서
- ⑦ 제도를 몰라서
- ⑧ 기타()

7-2. 귀하는 앞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할 것이다 → 문 7-2-1로
- ② 안 할 것이다 → 문 7-2-2로

7-2-1.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장실습지원금(이하, 실습비)을 받을 수 있어서
- ②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③ 학교에서 해야 하는 분위기여서
- ④ 졸업 필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 ⑤ 경력을 쌓기 위해서
- ⑥ 전공분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 ⑦ 기타()

7-2-2.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귀하가 특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며 실제 그 동기는 충족되었습니까?

*동기는 2개를 선택하되, 1과 2 번호로 순서를 매겨주세요.

*동기충족여부는 선택했던 동기에 대한 충족 결과를 체크해주세요.

구 분	동기(2개 선택)	선택한 동기의 충족여부
① 현장실습학기제 지원금 제공		(충족 / 불충족)
② 기업 이미지		(충족 / 불충족)
③ 취업 연계에 대한 기대		(충족 / 불충족)
④ 졸업 필수 요건 충족		(충족 / 불충족)
⑤ 전공 지식과 직무 내용의 일치		(충족 / 불충족)
⑥ 경력 및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		(충족 / 불충족)
⑦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기대		(충족 / 불충족)
⑧ 적성 및 관심(희망) 분야와의 일치		(충족 / 불충족)
⑨ 아무 생각 없었음		
⑩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12. 실습 전 학교와 실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교육 및 정보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실습기관/근무부서에 대한 정보
- ② 실습 조건(실습비, 실습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 ③ 주차별 커리큘럼
- ④ 실습 평가 방식
- ⑤ 안전보건교육
- ⑥ 성희롱 예방교육
- ⑦ 표준형, 자율형이 구분되어 있는 협약서
- ⑧ 상해/산재보험에 대한 정보
- ⑨ 없음

■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질문

13. 현장실습 중 수행한 직무는 귀하의 전공과 일치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4. 실습기관은 세부운영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주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세부운영계획서를 받지 못하였다

15. 귀하는 실습기관에서 얼마 동안 현장실습을 수행하였습니까?

(*실습중이라면 계약서에서 정한 실습 기간)

- ① 4주 이하 ② 4주 초과 8주 이하 ③ 8주 초과 12주 이하 ④ 12주 초과

16. 계약서에 적힌 실습시간과 실제 실습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① 계약서에 적힌 실습 시간			② 실제 실습 시간		
하루		시간	하루		시간
주		일	주		일

*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①란에는 X로 표기해주세요.

ex) '하루 (8) 시간, 주 (5) 일' 과 같이 기입해 주세요.

17. 계약서에 적힌 월 실습비와 실제 실습비는 얼마입니까?

① 계약서에 적힌 실습비			② 실제로 받은 실습비		
월		원	월		원

* ①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②아직 실습비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란에 X로 표기해주세요.

ex) '월 (500,000) 원' 과 같이 기입해 주세요.

18. 현장실습 중 계약서에 명시된 실습시간(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는 주 평균 몇 시간입니까?

- ① 5시간 미만 → 문 18-1로
- ② 5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문 18-1로
- ③ 12시간 이상 → 문 18-1로
- ④ 연장근무 한 적이 없다 → 문 19로

18-1. 연장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받았습니까?

- ① 모두 받았다
- ② 일부만 받았다
- ③ 못 받았다

19. 현장실습 중 휴게시간(법정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이상)은 제대로 부여되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20. 귀하가 현장실습을 하는 동안 수행했던 실습업무 내용과 실습기관의 처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귀하의 현장실습 경험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 ① 근로 중심의 노동력 활용
- ② 학습 중심의 실무 교육 및 실습

21. 경험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평가를 각 문항마다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주세요.

①	현장실습은 실습 참여 동기와 일치했습니까?	예 / 아니오
②	실습기관 내에 현장실습 학생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③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상황을 중간점검 했습니까?	예 / 아니오
④	학교에 고충 상담기관 또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23. 귀하는 현장실습학기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23-1. 위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24. 현장실습학기제를 개선한다면, 무엇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두 개만 선택하여 1과 2로 표기해주세요.

- ① 학교가 충분하고 적절한 실습기관을 제공해야한다(전공,연계,기관수,안정성) ... ()
- ② 실습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
- ③ 실습 전, 사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 ... ()
- ④ 실습 중 실습환경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가 성실히 점검해야 한다 ... ()
- ⑤ 실습 중 고충 및 사고에 대해 학교와 실습기관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한다 ... ()
- ⑥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여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
- ⑦ 실제 실습시간만큼 적절한 실습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 ()
- ⑧ 실습기관 평가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교가 현장실습학기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
- ⑨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전공 실무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
- ⑩ 정부가 학교와 실습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 잘해야 한다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바로알기 홍보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바로 알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대응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바로 알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세 주체,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와 실습기간간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 경험학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정 전공에서 가는 의무실습은 '필수이수실습'이라 하여 실습학기제와는 구분됩니다.

즉, 실습학기제는 제도 취지상 의무실습이 아닙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직무관련 교육시간	전체 실습기간 중 10%이상~25% 이하	전체 실습기간 중 25% 초과
실습시간	1주5일, 하루8시간 유급휴일, 휴계시간 보장 (학생 동의하에 1주 최대 5시간 연장 가능)	1주 4일미만 또는 15시간 미만도 가능 (휴계와 휴일은 학교와 실습기관 협의)
실습지원비	금전으로 지급(장학금x, 현물x)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습시간에 따라 지급(무급x)	직무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금전 지급, 제한적으로 무급 가능
정보공시	정보공시대상, 현황파악 가능	정보공시대상x, 실태조사는 가능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이 실습학기제 관련 협의시점에 '운영계획서'를 학교에 제출, 학교는 참가학생들에게 실습학기제 나가기 전에 계획서 제공 · 학교는 참가학생들의 상해보험가입, 실습기관은 참가학생들의 산재보험 가입 · 학교는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습학기제 시행계획과 현장점검, 중간점검 등 진행해야 하며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실습학기제 참여한다면?
확인하고 체크할 것!**

- 1 나는 표준형인가 자율형인가 (실습지원비,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달라짐)
- 2 실습기관의 조건, 내가 가서 하는 일은 뭔지 알고가자 (운영계획서 받기, 전공관련성 확인)
- 3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자 (알아서 영상보기는 X)
- 4 산재보험가입, 상해보험가입 여부 확인하자
- 5 기존 인권침해, 무리한 노동 등으로 문제가 있던 업체인지 확인하자 (제외할 것을 학교에 요구)
- 6 아래와 같은 경우 등은 실습학기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 실습기관(산업체, 국가, 공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한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경우
- 정해진 수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미가입한 경우
- 실습지원비를 미지급한 경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실습에 방점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실습학기제이며,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에 방점을 두고 대학의 자율운영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학기제 참여자들은 사전에 표준형과 자율형 어떤 유형으로 실습학기제를 진행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학교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수행 기회를 통해 나의 적성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것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내가 이후 무엇을 더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지를 익히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실습학기제를 모두 꿈꿉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가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의 경험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열정페이로 없애기 위해 몇 차례 바뀐 실습학기제 관련 법이 있다고 하니 제도적 보장도 가능하리라 추측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 둘 어긋나기도 합니다. 내가 표준형으로 실습을 하는지 자율형으로 하는지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는 회사 이름과 위치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경험 학습이라고 했는데 그냥 노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권리는 없습니다. 실습학기제에 대해 학생들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은 더 얘기해서 유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문제로 드러내야 합니다.

연락하세요!

unicoop2023@gmail.com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발생했던 문제를 알려주고 싶다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 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 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4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3.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 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제5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제4조제4항·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별 학칙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7조(학생)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각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 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8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2.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 6.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 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 3.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제9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지원센터는 각 학교별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 8.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 ③ 지원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환경·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 ④ 지원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된 후 시행한다.
- ⑤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지원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⑧ 지원센터에서는 제6항 및 제7항 외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장의 의무 등) ① 각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각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운영 사항의 점검, 실습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업무 협의 등 현장실습학기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다.
- ③ 각 학교의 장은 제29조의 정보공시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 시 거짓 또는 이 고시에 위배되는 부적격 사항이 제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절차) ① 학교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경우 이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3. 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2. 학생의 학교별 요구하는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3. 각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 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약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13조(적합성 검토) 학교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성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제14조(협약) ①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 ②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관리) ①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 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 ②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교별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
- ⑤ 제4항 적용 시 제27조의 채택실습은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9조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정보공시 제출 시에는 학교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과 달리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마친다.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18조(학생 보호) 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함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⑥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 ⑦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 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⑧ 제17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19조(학교별 규정)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이 고시에 근거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 ②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수행 사항을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실습기관 발굴 및 현장점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20조(자료 구비 등)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2.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
 3.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
 4.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 ②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

성하고 관련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
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단과대학, 전공), 학번, 이름, 학년
3. 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
4.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
5.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
6.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등
7. 그 밖에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등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21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 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 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숙소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3조(근로계약) ① 실습기관에서는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

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1.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및 출석·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22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① 각 학교에서는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해당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21조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26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

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중단인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학교별 규정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어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재택실습) ① 국가재난 발생 시,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제28조(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업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에서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여야 하며, 대체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지도 · 감독 등

제29조(정보공시 연계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는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운영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정보공시 대

상으로 하지 않으나, 실태조사는 실시한다.

제30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건설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점검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서 이 고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처리하며,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사업 또는 조직(협의체) 등의 지정·운영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각 정부부처 등"이라 한다)은 산학협력 법 제11조의3제1항·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

1.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수련 과정으로 운영한다.
3.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이하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31조(기타)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실습기관 지원 및 현장실습학기제의 활성화 방안, 각 조문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및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9호, 2021. 7. 6.>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30조제5항 각 호는 2022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된 현장실습학기제 중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충족하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적용한다.

부칙 <제2021-33호, 2021. 12. 1.>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30조제5항 각 호는 2022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된 현장실습학기제 중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충족하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적용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1.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김기홍·조희경·오병진, “전문대학에서 현장실습과 실습학기제 운영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 김승경·최정원·강정환,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김태형·유영삼·박지성·황의택,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대응 사례 연구”.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2023), 107-117.
- 김태형·유영삼·박지성·황의택, “교육부 고시 개정이 대학 현장실습학기제에 미치는 영향: 대학 현장실습 운영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2023), 49-59.
- 노영희, “실습기관 인식조사 기반 표준현장실습의 도입논의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3호 (2022. 8.), 153-179.
- 대학생현장실습대응모임 보도자료,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피해자의 권리를 기각한 인권위원회에 묻는다!”, (2023. 6. 12.)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2015. 7.)
- 장후은·허선영·이종호,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2017), 493-500.
- 한국공학한림원, “현장실습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2018)
- 홍은영·최종인, “대학 현장실습 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018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18. 4.), 49-55.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